2023-11호(11. 30.)

입법정책담당관

입법·재정 정보

이 자료는 의원님들의 자치입법 활동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최근의 입법·재정 자료를 요약·정리하여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 라 북 도 의 회 사 무 처

Jeollabuk-do Provincial Assembly

차 례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1.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 1
2.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 ····· 4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1. 「도로교통법」 ····· 9
2.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2

□ 환경복지위원회

1.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14
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6

□ 농산업경제위원회

1.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2.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5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1.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28
2.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9

□ 교육위원회

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31
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33

차 례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1.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 ····· 37

Ⅳ. 법령 해석 사례

1.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 47
2.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 51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 59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62

차 례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1. 세계 2차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과 시사점(현대경제연구원) ····· 69
2. 2024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대외경제정책연구원) ····· 74
3. 럼피스킨(LDS) 발생과 대응(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0
4.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하나금융경영연구소) ····· 85
5.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7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 맞손(전라남도) ····· 97
2. 경남 거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착공한다(경상남도) ····· 99
3.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포트서비스 오픈(경상북도) ··· 101
4. 장애인 공무원 7명 임기제로 채용…장애인 전형 최초 실시(경기도) ····· 104
5. 학교급식로봇 공개의 날 운영(서울시교육청) ····· 105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농림축산해양수산위) ····· 109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보건복지위) ····· 112
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학생맞춤형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교육위) ····· 115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 실태 ····· 119

【 입 법 분 야 】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Ⅰ 타 시·도 최근 제정 주요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시행 2023. 11. 15.] [세종특별자치시조례 제2307호, 2023. 11. 15., 제정]

1. 제정이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재해에 대한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7조).

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제8조).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주소를 둔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 설치)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부서는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교육사업 등 농업기계 안전을 포함한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실시계획) ①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

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

2. 안전재해 예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교육·홍보

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

나. 농업기계·장비 안전 사용교육

다.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

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재해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시행 2023. 11. 2.] [전라남도조례 제5861호, 2023. 11. 2., 제정]

1. 제정이유

○ 최근 온라인 성범죄 유형이 나날이 진화되고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하는 등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에 노출되고 있음. 특히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안 제5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전라남도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 성착취”란 아동·청소년을 성적(性的)으로 이용하여 성행위 및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아동·청소년의 권리) 아동·청소년은 모든 형태의 성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보호·자립지원, 의료·법률지원 및 사례관리
2.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시 전문상담원 지원
3.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자, 가족, 교사 등 관계인에 대한 교육·상담
4.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를 위한 도민 감시·신고 활성화 및 지원
5. 아동·청소년 성착취 예방교육, 홍보·캠페인 등 인식개선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방지 및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 위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2. 법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
3. 법 제47조의2에 따른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4. 그 밖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방지하고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Ⅱ 제·개정 주요 법령 및 입법예고

□ 행정자치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 2023. 10. 24.]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통학버스의 이용 범위인 **'어린이의 통학 등'에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시켜 어린이통학버스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및 해당 면허를 받은 운전자 등의 준수사항,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개정문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한다)**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차. <생략>

제5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등록된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등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한 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거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에 설치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하거나 조작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점검 또는 정비를 위한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 당하는 경우
4. 제8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부착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⑤ 누구든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 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기준·방법 및 등록 기준·등록 절차, 제6항에 따른 운행기록 제출 및 검사의 시기·방법, 그 밖

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이하 "조건부 운전면허"라 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②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제82조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게 적용되는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하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운전면허의 범위·발급·종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도로교통법」[2023.10. 24.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2. <생략>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 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가. ~ 차. <생략>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한동훈(법무부장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0-26~2023-12-05)

◇ 개정(제안)이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약탈적 성폭력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이 커짐에 따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검사의 의무적 전문의 진단 및 치료명령 청구**

검사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나.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 청구 절차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1) 보호관찰소의 장은 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요건을 갖추고 **치료명령이 선고되지 아니한 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경우 검사**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함.

2) **검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치료명령**을 **고지**하도록 함.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조(치료명령의 청구) ③ 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 죄는 제외한다)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성도착증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1. 13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2. 성폭력범죄를 3회 이상 저질러(종전에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

제22조의2(거주지 제한명령의 청구 신청 전 치료명령 청구)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거주지 제한명령 청구의 신청 전 성폭력 수형자에 대하여 약물치료의 내용, 방법, 절차, 효과, 부작용,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수형자에 대한 치료명령의 절차는 제22조제2항(제1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하되, “수용시설의 장”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 환경복지위원회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7. 19.] [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제정]

◇ 제정이유

경제적 · 심리적 ·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태아 및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생모 및 생부와 그 자녀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를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 · 도지사가 보건소, 지방의료원 등을 지역상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나. 지역상담기관이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에게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지원 사항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도록 하고, **가능한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며, 상담에도 불구하고 **보호출산 및 그 자녀인 아동 보호를 희망하는 위기임산부**에게 보호출산의 절차와 법적 효력 등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도록 함(제7조).

다.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위기임산부의 산전 · 산후 보호를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입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후조리도우미의 이용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상담을 받은 위기임부로서 보호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그 상담을 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에 대하여 비식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도록 함(제9조).

마. 보호출산 신청인이 의료기관 중 산전 검진 및 출산을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하여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상담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비식별화된 정보로 산전 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의료기관은 **비식별화가 이루어진 정보로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함(제10조).

바. 보호출산을 통하여 아동이 출생한 경우 비식별화된 생모의 가명 · 관리번호 및 아동의 성별 · 수 · 출생 연월일시 등의 출생정보를 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상담지원기관, 지역상담기관, 시 · 읍 · 면 순으로 제출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시 · 읍 · 면의 장이 아동의 성과 본을 창설한 후 이름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하며, 출생기록 사실 및 아동의 성명 등을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제11조).

사. 보호출산 신청인이 출산일부터 7일 이상의 숙려기간 후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아동을 인도하거나, 지역상담기관의 장에게 인도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이 인도된 때부터 친권의 행사는 정지되며, 아동을 인도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아동의 미성년후견인**이 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제12조).

아. 보호출산 신청인이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을 다시 인도받은 때부터 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자. 위기임부가 아동을 출산한 후 출생신고를 마치지 아니하고 비식별화 및 아동의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출산일부터 1개월 내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하도록 함(제14조).

차.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보호출산 신청인 및 생부의 성명 · 본, 유전적 질환 등이 포함된 **출생증서를 작성**하도록 함(제15조).

카. 시 · 읍 · 면의 장에게 아동의 출생기록 사실을 통보받은 지역상담기관의 장은 출생증서가 담긴 봉투 겉면에 아동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 뒤 이를 지체 없이 아동권리보장원에 이관하도록 함(제16조).

타.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은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출생증서를 공개하되,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가 사망 등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출산을 통하여 태어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출산 신청인 또는 생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17~2023-11-26)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학대피해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동료간 상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문 일부가 자립생활 실현이라는 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장애인을 지원정책의 수동적 객체로만 표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피해장애인의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간 연계 강화 및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한 성과평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해당 법문을 수정하여 장애인 자립지원 제도와 정책의 목적이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 실현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피해장애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하도록 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에 대하여도 성과평가를 도입**하여 학대피해장애인의 자립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제59조의10, 제59조의12, 제59조의13, 제59조의17 및 제90조).

◇ 개정문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를 “장애인이 자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사회참여를 증진하는 데”로 한다.

제59조의1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제59조의1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

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해장애인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제59조의13제1항 중 “사회복귀 지원”을 “**자립 지원**”으로 한다.

제59조의17의 제목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의 성과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성과평가 및”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와”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9조의13제1항에 따른 장애인쉼터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0조제3항제3호의6 중 “제59조의12제5항”을 “제59조의12제6항”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2023.11.3. 시행]

제56조(장애동료간 상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애동료 간의 대화나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0(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와 장애인학대 현황 조사
3. 장애인학대에 관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4.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 및 치료와 피해장애인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장애인학대 예방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59조의12(사후관리 등) 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장애인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장애인학대가 종료된 후에도 피해장애인의 안전 확보, 장애인학대의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장애인, 피해장애인의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피해장애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 피해장애인의 보호자·가족 및 장애인학대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지원에 참여하여야 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9조의13(피해장애인 쉼터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피해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이하 “피해장애아동”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를 위하여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17(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성과평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증 반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
3. 제40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3의2. 삭제

3의3. 삭제

3의4. 제5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고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59조의4제2항제1호 중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3의5. 제5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

3의6. 제59조의12제5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업무 수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 개시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의 운영 중단·재운영·시설폐지 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자
6.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소의 개설 또는 변경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를 제조하거나 개조한 의지·보조기 제조업자

□ 농산업경제위원회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30.] [대통령령 제33882호, 2023. 11.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생산 · 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거나 소량 배출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889호, 2022. 6. 10. 공포, 2023. 11. 30. 시행)됨에 따라, **청정수소의 인증기준,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및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제34조의2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수소 및 수소화합물의 인증기준을 정하고, 청정수소의 인증기준에 적합한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해서는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제34조의5 신설)

청정수소 생산량 · 수입량 · 판매량의 미신고 등을 이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제34조의8 신설)

청정수소 인증업무 전담조직 및 운영인력 등 청정수소인증기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또는 수소유통전담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증운영기관 및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구분하여 청정수소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저탄소수소 및 저탄소수소화합물의 기준) ① 법 제2조제7호의2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7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화합물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제34조의10부터 제34조의17까지로 하고, 제4장의2에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청정수소의 인증기준 및 등급)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생산·수입 등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이란 원료의 채굴부터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의 생산·수입까지의 과정(국내외 운송과정을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 등 온실가스의 유무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의 생산 방법이나 생산에 적용되는 기술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에 대하여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하여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등급 구분 및 등급별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3(청정수소의 인증절차 등) ①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청정수소 인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 사실과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인에게 청정수소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정수소 인증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4조의4(청정수소 생산·사용자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정수소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2. 그 밖에 청정수소의 생산량·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34조의5(개선명령의 이행 보고 등) ①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 점검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5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6(청정수소의 인증기준 유지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을 받은 자가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기준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제34조의7(생산·수입·판매 등의 신고) ① 청정수소를 생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는 법 제25조의3에 따라 청정수소의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하여 분기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청정수소의 품목, 수량, 판매 일자 등에 관한 세부사항과 신고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34조의8(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
2. 법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3. 그 밖에 청정수소의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청정수소 인증 신청의 접수 및 검토
   나. 청정수소 인증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의 운영·관리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2. 인증시험평가기관(법 제25조의2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수소생산 설비 등에 관한 현장심사 및 기술검증
   나. 평가결과보고서의 발급
   다. 그 밖에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5조의4제1항에서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인증운영기관
   가.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1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인증시험평가기관
   가.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출 것
   나. 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갖출 것
   다. 청정수소 인증 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평가하는 기기를 갖출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수행업무 및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34조의17(종전의 제34조의9)제2항제2호 중 “제34조의7”을 “제34조의15”으로 한다.

제57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인증운영기관: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 및 인증서 발급
   나. 제34조의3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부적합 판정 결과의 통지
   다. 제34조의3제4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 비용의 수납
   라.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청정수소를 생산·사용하는 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신청의 접수, 확인 및 심사
   마.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청정수소 인증표시 도안의 설계 및 개선
   바. 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 사실의 공고
   사. 법 제25조의3에 따른 청정수소의 생산량·수입량·판매량과 구매자에 대한 신고 접수
2. 인증시험평가기관: 법 제25조의2제7항에 따른 인증기준 유지 여부 점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15~2023-11-29)

◇ 개정이유

「축산법」은 1963년 제정되어 가축의 개량·증식 및 사양을 장려하여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후 여러 차례 법령 개정을 거쳐 가축개량, 축산업허가제, 가축시장의 개설·운영, 축산물 등급판정, 친환경 축산물 인증·관리 및 축산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등 축산업 발전 정책을 위한 제도적 근간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함.

하지만, 최근 들어 **사육규모 증감 사이클 반복에 따른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기후변화 등에 따른 세계 곡물가격 불안정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농가들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건강·가치 중심으로의 소비트렌드 변화 및 탄소중립·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등 축산업이 추구해야 할 정책 여건 및 상황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음.

이에 따라 **축산물 소비촉진, 수출 확대, 연구개발 등 축종별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실현 등 새로운 **정책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함(안 제3조).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가축의 이용촉진, 축산물의 수출확대 등 축산업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2)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나.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8항).

다. 축산 중소농 보호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등록을 제한함(안 제22조제6항).

라. 안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안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실태조사를 위한 정보를 관련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자가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7항).

바. 축산물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4제5항).

◇ **개정문**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를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주요 축종별 축산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책을 수행하기”를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축의 개량 및 토종가축의 보존
2.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 · 가격안정
3. 가축의 도축, 가공 등 이용촉진 및 축산물의 유통관리
4.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조성
5. 사료의 수급안정 · 품질관리
6. 가축분뇨의 처리 및 악취 저감
7. 탄소중립 실현 등 기후변화 대응
8. 그 밖에 축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⑥ 시 ·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의 축산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축산업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생산성 향상, 축산물의 품질 및 축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여 농가에 보급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축산업의 허가 등)”을 “(축산업의 허가 및 기업제한 등)”으로 한다.

제22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해서는 축산업의 허가 및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제1항 중 “등록한”을 “등록한 정보와 추가적으로 활용이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제22조제6항에 따른 기업자본 및 기업에 대한 축산업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정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송아지생산 및 수급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수급정책에 따른 수급조절을 위하여 일정기간 사육한 가축을 도축 및 출하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의4의 제목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을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및 수출기반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수출확대 및 수출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시장 개척, 국제협력 촉진, 수출검역 개선

2. 수출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 해외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3. 11. 17.] [대통령령 제33848호, 2023. 11. 7.,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413호, 2023. 5. 16. 공포, 11. 17.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관할하는 지역**으로서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인한 **어업권·양식업권의 피해 정도**와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등 **지역개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 포함**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이하 이 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권·양식업권의 피해 정도**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한 **주변지역 개발의 필요성**

가. 인구의 **현저한 감소**

나.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 발생**

다.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의 악화**

부 칙

이 영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2023. 5. 16. 시행]

제12조(주변지역개발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일정한 지역을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권·양식업권 등의 직접적인 피해와 주변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20~2023-11-29)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재돌봄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재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함)로 지정할 수 있으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센터 종사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장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률을 위반하여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 주요내용

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센터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5제2항제3호 신설).

◇ 개정문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의5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5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장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문화재보호법」[2023. 5. 4. 시행]

제80조의5(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
2. 지역여건에 적합한 문화유산돌봄사업을 위한 연구 및 조사
3.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상호 간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4.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직장교육
5. 그 밖에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시·도지사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및 취소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교육위원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0. 19.] [행정안전부령 제432호, 2023.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3. 10. 19] [교육부령 제309호, 2023.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3. 10. 19] [국토교통부령 제1259호, 2023. 10. 19, 일부개정]
[시행 2023. 10. 19] [보건복지부령 제973호, 2023. 10. 1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9357호, 2023. 4. 18. 공포, 10. 1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개정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9조의4에 따른 국제학교"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지정 계획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지정 계획	총 ___개소	유치원 ___개소, 초등학교 ___개소, 특수학교 ___개소, 어린이집 ___개소,
		학원 ___개소, 외국인학교 ___개소, 대안학교 ___개소, **대안교육기관** ___개소, 국제학교 ___개소,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___개소,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___개소

별지 제8호서식 제1호 중 어린이 보호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지정대상 (개소)	지정현황 (개소)	보호구역 전체 거리(km)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4. 20.>

지정 계획	총 ___개소	유치원 ___개소, 초등학교 ___개소, 특수학교 ___개소, 어린이집 ___개소,
		학원 ___개소, 외국인학교 ___개소, 대안학교 ___개소, 국제학교 ___개소,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___개소,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___개소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 7. 4.>

구 분		지정대상 (개소)	지정현황 (개소)	보호구역 전체 거리(km)
어린이 보호구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2인)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 2023-11-10~2023-11-19)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와 학교담임교사의 추천, 보호자의 상담 등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개인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로 인하여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워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학생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등).

◇ 주요내용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학교의 장은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학력 보장법」[2022. 3. 25. 시행]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별 기초학력 수준 도달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이하 “기초학력진단검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내용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Ⅲ 최신 외국 입법정보

독일의 소음지도 관련 입법례(국회도서관, 제235호, 안성경)

□ 배경

○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음 민원이다.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소음 민원은 2009년 4만 2,400건에서 2019년 14만 3,718건으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국가소음정보를 소음지도 방식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 유럽연합은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2002년 「EU환경소음지침」을 제정하여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면서 회원국에게 높은 수준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독일은 소음지도에 관하여 「연방공해방지법」 제47c조 및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소음지도에 관한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이를 환경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소음지도의 작성 방법을 환경부고시로 정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환경소음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소음지도에 단순한 측정지점만을 표시하고 있어 정확한 지역별 소음정보를 얻기 어렵다.**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해 소음 정보를 평면적으로 시각화하는 등 도시 전반의 소음 현황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하며, 나아가 소음지도를 환경계획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 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법률 제19173호)」, 「소음·진동관리법(법률 제19150호)」,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고시 제2016-117호)」

□ 도입

○ 소음공해는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연도별 **환경분쟁 처리건수**를 보면, 환경분쟁 총 처리건수는 3,495건인데 그 중에서 **85%가 '소음·진동'**이다. 이는 대기오염 6%, 일조 4%, 수질오염 3%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비율[1]이다.

1) https://thevoiceofus.co.kr/mobile/article.html?no=137(2023. 11. 3.)

○ 우리나라는 「환경정책기본법」과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 작성방법」에 근거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소음지도(騷音地圖)[2]를 작성하여 국민에게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연혁적으로 2009년에 「소음진동관리법」 제4조의2를 신설하여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일정 지역의 소음 분포 등을 표시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도록하였고, 2020년 6월부터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여 공개하고 있다[3].

2) 소음지도란,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건물 등의 정보와 측정 또는 예측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를 말한다(환경부고시 「소음지도의작성방법」 제2조).

3) 이 법에 따라 작성한 소음지도(騷音地圖)를 바탕으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2020년 6월부터 전국 '소음진동 측정망' 정보를 소음지도 방식으로 개편하여 [그림1]과 같이 공개하고 있다. 소음진동 측정망은 국가(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망 844개 지점, 지자체망 1,161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기후를 측정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특정한 '측정지점'을 활용하고 있다.

○ 독일은 「EU환경소음지침(2002/49/EC)」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002년 「연방공해방지법(BImSchG)」을 일부 개정하고, 2006년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BImSchV)」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여 국민에게 소음 정보를 공개하고 환경계획에소음저감 정책을 반영하는 등 소음지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음지도는 **측정지점의 소음지수**를 소음 단계별로 색상을 구분하

여 단순한 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어, 측정지점에 한하여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다. 반면 [그림2] **독일**의 베를린 소음지도에서는 소음지수 및 소음전파 상황을 평면적으로 시각화하여 **주변 지역의 소음 수준**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도시 전반의 소음 현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그림 1 우리나라 영등포구 소음지도[4]



그림2 독일의 베를린 소음지도[5]



4) https://www.noiseinfo.or.kr/index.jsp (2023. 11. 8.)

5) https://geomap.immo/update-laermkarte-berlin/ (2023. 11. 3.)

□ 「EU 환경소음지침(EU 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1. 배경

○ 2002년 6월 25일 제정된 「EU환경소음지침(2002/49/EC)」[6]에서는 「유럽공동체설립조약(TEC)」[7] 제174조에 따라 높은 수준의 건강 및 환경보호를 달성하는 것이 유럽연합공동체 정책의 일부이며, 추구해야 하는 목표 중 하나로서 '소음으로부터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다.

6)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2L0049 (2023. 11. 3.)

7)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12002E/TXT (2023. 11. 3.)

2. 목적

○ 이 지침의 목적은 환경 소음에의 노출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한 일반적인접근 방식으로서, 회원국이 공통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소음지도를 통해 환경 소음에 대한노출 정도를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제1조 제1문).

○ 또한 각 EU 회원국이 소음지도를 기반으로 인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소음**[8]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제1조 제2문).

8) **'환경 소음**(Umgebungslarm)'이란 운송수단, 도로교통, 철도교통, 항공교통 수단 및 부속서I에 정의된 것과 같은 산업활동 현장에서 방출되는 소음을 포함하여 인간활동에 의해 생성되는 원치 않거나 유해한 실외 소리를 의미한다(제3조 제a호).

3. 적용 범위

○ 이 지침에서 말하는 환경 소음의 적용 범위는 주택가, 공원 또는 밀집 지역, 개방된 시골의 조용한 지역(quiet areas)과 학교, 병원 및 기타 소음에 민감한 건물 근처의 인간이 노출된 곳이다. (제2조 제1항)

○ 이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 소음의 종류는 노출된 인간 자신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내부 활동으로 인한 소음, 이웃에 의해 발생하는 소음, 작업장 소음, 운송수단 내부 소음 또는 군사 지역에서의 군사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제2조 제2항)

4. 전략적 소음지도

○ 「EU환경소음지침」에서는 전략적 소음지도의 작성을 장려하고 있는데, 전략적 소음지도[9]의 제작을 통해 장기적으로 도시의 계획단계에서부터 도로 및 철도와 같은 소음 발생원의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다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의 유지와 함께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도시개발을 가능하게 한다.[10]

9) '전략적 소음지도(strategische Larmkarte)'란 특정 지역의 다양한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공해를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예측을 위한 지도를 말한다(제3조 제r호).

10) https://preview.kstudy.com/W_files/ftp41/14110262_pv.pdf (2023. 11. 3.)

○ 모든 EU 회원국은 국경 근처의 전략적 소음지도 작성에 상호 협력해야 하며, 략적 소음지도는 작성일로부터 최소 5년마다 검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11]

11) 전략적 소음지도를 활용하는 오스트리아에서는 소음지도를 활용한 장기적 환경계획을 설계하고 있다. 전략적 소음지도의 범위는 도로 운송(고속도로, 국도), 철도운송(철도 노선, 트램 노선), 항공 교통, 산업(IPPC 공장)이며, 소음지도는 상세한 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가 된다.https://www.laerminfo.at/laermkarten.html(2023. 11. 3.)

□ 독일의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1. 목적

○ 1974년에 제정되어 2023년 최종 개정된 「연방공해방지법(BImSchG)」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사람, 동식물, 토양, 물, 대기, 문화재 및 기타 물질적 자산을 보호하고, 유해한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제1항)

○ 특히 2002년 「연방공해방지법(BImSchG)」을 일부 개정하여, 소음지도 관련 규정인 제47조 이하 규정을 신설하여, **소음지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2. 소음지도 작성 기준

○ 소음지도 작성은 ①전년도 기준으로 25만 명 이상 주민이 사는 대도시 지역과 ②연간 교통량이 600만 대가 넘는 주요 도로, ③연간 교통량이 6만 대 이상인 주요 철도노선과 ④주요 공항을 대상으로 소음지도를 작성해야 한다.(제47c조제2항)

○ 공공철도회사는 소음지도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소음지도 작성 기관에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관할 당국은 국경 지역의 소음지도 작성에 있어 다른 EU회원국과 협력해야 한다.(제47c조 제2a항 및 제3항)

3. 소음지도 작성 주체

○ 이 법에서 규정하는 소음지도에 대한 관할 당국은 주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이다(제47e조제1항). 다만 연방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한 소음지도를 작성할 책임은 연방 철도청에게 있으며, 주요 철도노선의 소음정보를 환경부에 전달할 책임과 대중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제47e조 제3항)

□ 독일의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시행령(34. BImSchV)」

1. 목적

○ 2006년 3월 6일 제정된 「제34차 연방공해방지법 시행령(BImSchV)」은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이행을 위한 제34차 명령으로서 주변 지역 소음 측정에 적용되며, 「연방공해방지법(BImSchG)」 제47c조에 따른 소음지도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제1조)

2. 소음 평가 방법

○ 소음지도는 환경 소음의 표현 및 측정의 기준이 되는 국제표준 [ISO1996-2:1987]에 따라, 낮(LDay), 저녁(LEvening) 및 밤(LNight)으로 나누어 측정한다.(제2조 제1항)



○ 데이터 수집과 관련하여, 소음지도 작성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은 아래 기관에게 소음지도 작성에 필요한 데이터와 소음지도의 결과 데이터를 무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제3조 제1항)



○ 소음지수 LDEN(데시벨) 및 밤(LNight)을 기준으로 각 유형의 소음 즉, 도로 소음, 철도 소음, 항공기 소음, 항만 소음을 포함한 산업 및 상업 소음에 대하여 개별 소음지도를 작성해야 한다.(제4조 제2항)

3. 소음지도의 구성

○ 소음지도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포함하여 작성한다.(제4조 제4항)

- 등음선을 이용한 소음 현황의 그래픽 묘사
-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그래픽으로 묘사
- 등음선 내 지역에 거주하는 예상 인구수의 도표형식 정보
- 위치, 규모 및 교통량에 따른 주요 소음원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 주변 지역에 대한 설명: 광역도시권(위치, 크기, 인구), 도시, 마을, 농촌
- 지방 또는 비농촌지역, 기타 주요 소음원
- 이미 시행되었거나 현재 진행 중인 소음환경계획 및 소음방지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 소음방해를 받는 지역 내의 주택, 학교 및 병원의 예상 개수
- 소음 측정을 담당하는 관할 관청에 대한 정보
- 그밖에 소음지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시사점

○ 환경 분야에서 주제도(主題圖)를 활용하여 환경 정보를 시각화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이를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좋은 예로 해양환경지도, 수질환경지도, 생태지도, 탄소지도, 온실가스지도 등이 있으며 소음지도도 그중 하나이다. 독일의 소음지도 작성과 활용을 위한 법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소음지도 작성과 활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소음지도는 소음 발생지역의 평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음지수 표현이 가능하여, 대상 지역의 소음 현황을 시각적인 면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도록 해준다. 이러한 **다각적인 소음 현황의 파악은 소음저감대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지역을 식별해냄으로써 소음에 의한 민원을 줄이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독일은 유럽연합의 「환경소음지침」에 근거하여, **소음지도를 활용한 환경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음지도 작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환경 소음지도를 환경계획에 반영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더불어 독일은 「연방공해방지법」 및 시행령을 통하여, 환경소음의 표현과 측정기준 등 평가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환경계획 및 정책수립의 기초로 삼고 있다.

Ⅳ. 법령 해석 사례

Ⅳ 법령 해석 사례

1.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여부(「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392, 2023. 11. 3., 환경부]

【질의요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제1항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각 호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1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제3호 및 제6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사항에 대해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각주: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의결사항과 관련된 행정기관 등으로서, 환경부장관(제1호),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제2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4호), 관계 중앙행정기관(제5호) 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법적으로 구속되는지?

【회답】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먼저 「물관리기본법」 제20조에서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에서는 제22조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하거나,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관리기본법」 제20조 및 제22조에서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의결"이라는 용어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1인으로 되어 있는 독임제 행정기관과는 달리 의사결정의 주체가 다수인 위원회 조직에서 다수의 의견을 모으는 행위의 형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서 "의결"은 위원회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바(각주: 법제처 2011. 11. 24. 회신 11-0669 해석례, 법제처 2011. 3. 24. 회신 11-0070 해석례 및 법제처 2010. 10. 1. 회신 10-0304 해석례 참조), **"의결"이라는 표현만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4항 및 제29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22조제2호[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하 "유역계획"이라 함)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함)과의 부합 여부] 및 제5호(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계획과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부합 여부를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물관리 관련 계획 및 유역계획의 국가계획 부합 여부'라는 특정한 사항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을 근거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같은 법 제27조제4항 후단 및 제29조제2항의 반대해석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계획 조정 요구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바, 해당 규정만으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과 책임을 변경하는 정도로 물관리 관련 계획에 관한

종국적인 의사 결정 권한이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부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보면, 관계 행정기관등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같은 법 제22조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으로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물관리기본법」이 2018년 6월 12일 법률 제15653호로 제정될 당시의 입법자료에 따르면 같은 법은 기존의 물관리 정책 관련 기구인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각주: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관한규정」(국무총리훈령 제344호)에 따라 설치·운영되었음.)'와 '수질개선기획단(각주: 「수질개선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64호)에 따라 설치·운영되었음.)' 등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사전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부처간 물관리 정책 관련 이견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물관련 정책 및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설치하여 개별 부처에서 수립하는 물관리 계획을 연계하는 국가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바(각주: 2016. 11. 의안번호 제2000581호로 제출된 물관리기본법안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물관리기본법」 제22조 각 호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통합된 국가계획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해당 정책과 계획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같은 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의 물관리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 관련된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관계 행정기관등이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관리기본법」

제20조(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위치 및 관할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기능)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27조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9조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3. 수계별 유역 범위의 지정
4. 물의 적정배분을 위한 유역 간 물 이동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제출한 물관리 관련 계획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의 부합 여부
6. 제32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물분쟁의 조정
   가.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물분쟁
   나. 둘 이상의 유역에 걸친 물분쟁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
7.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이행상황 및 물관리 전반에 대한 평가
8. 물관리와 관련하여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9.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

2.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 중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의 의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5항제4호 등 관련)

[법제처 23-0468, 2023. 11. 3., 충청북도]

【질의요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각주: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함.)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5항제4호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300세대(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세대를 뺀 세대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각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하며, 이하 같음.)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해야 하는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각주: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하지 않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증가하는 취학 인구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전제함.)가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유】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은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인데,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같은 규정에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학교용지법령에서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규정된 ‘학교시설’의 의미 및 ‘무상공급’의 구체적인 범위나 방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학교용지’를 ‘공립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함)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시설’은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로 볼 수 있고, ‘무상공급’이란 일반적으로 ‘요구나 필요에 따라 물품 따위를 무상으로 제공함’을 뜻하는바(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를 기존의 공립학교의 교사 등의 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로만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도 같은 호에 따른 학교용**

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각주: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두13262 판결례 참조)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는 2009년 5월 28일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로 추가된 것(각주: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는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어 신설될 당시에는 제5조제4항제4호였으나, 2017. 3. 21. 법률 제14604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면서 현행과 같이 제5조제5항제4호로 이동하여 규정됨.)으로,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는 경우와 형평을 맞추는 동시에(각주: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학교용지법이 일부개정되기 전에는,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사유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하는 경우'(구 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제1호)가 규정되어 있었을 뿐 '학교시설을 무상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없었음.)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무상공급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규정(각주: 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일부개정된 학교용지법 개정이유서 및 2008. 11. 21. 의안번호 제1802165호로 발의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인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증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즉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 지출되는 시·도교육청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여 지방교육재정상 부담이 완화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 역시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발생한 경우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할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같은 규정의 입법 취지 및 **학교용지부담금의 징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한편 만약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도 교육청 소관인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각주: 「지방재정법」 제9조 · 제1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 제38조, 학교용지법 제5조의4 등 참조)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함으로써 시 · 도 소관인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각주: 학교용지법 제5조의4에 따라 설치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납입될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면제한 학교용지부담금 상당액만큼 세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법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경비 2분의 1을 그대로 시 · 도의 일반회계 또는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각주: 법제처 2018. 1. 19. 회신 17-0487 해석례 참조)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으나,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시설 건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에서 어떻게 부담하게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감면 사유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한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여부에 관한 문제와 결부시켜 같은 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축소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시 · 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는 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4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해당**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 · 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 · 개발하거나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 저. (생 략)
3.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

는 경비(이하 “부담금”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분양자등”이라 한다)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⑥ (생 략)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Ⅴ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1.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

[법제처 의견23-0420, 2023. 11. 7., 경기도 화성시]

【질의요지】

가.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나.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의 공통사항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각 호에서는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

행하는 경우(제1호),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제2호),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화성시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제3호),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항에서는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제1호),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제2호)에는 제4조에 따른 화성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례안 제10조제1항에서는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제1호),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제2호)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법령의 범위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를 의미하고, 그 사무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합니다(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참조).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무가 화성시의 소관 사무인지 살펴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라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1호마목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등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고 있는바,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화성시의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화성시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의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각주: 법제처 2017. 11. 30. 의견제시 17-0285 참조)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무는 화성시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개별 법령에서 이러한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비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에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다면 **고소·고발된 당사자가 무죄의 판결을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의 환수 등에 관하여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법제처 의견23-0422, 2023. 11. 10.,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질의요지】

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같은 조례는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질의 가.와 관련하여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는 경우,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려면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해야만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례의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삭제해도 되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아래 이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

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교류협력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은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교류협력조례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살피건대 지방기금법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류협력조례에서는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있는바, 그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류협력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교육관련 기관·단체 간의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조례로서, 협력기금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제6조, 제7조) 등 협력기금에 관한 사항 외에도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된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제2항),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제5조),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도 교류협력조례 전체가 실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실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류협력조례에 따른 협력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은 실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교류협력조례를 정비하려는 경우, 같은 조례를 폐지하고 협력기금과 관련된 내용을 제외한 내용으로 다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고, 같은 조례의 협력기금과 관련된 규정만 삭제하여 개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재 정 분 야 】

Ⅵ. 재정 동향

Ⅵ 재정동향

1. 세계 2차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2023.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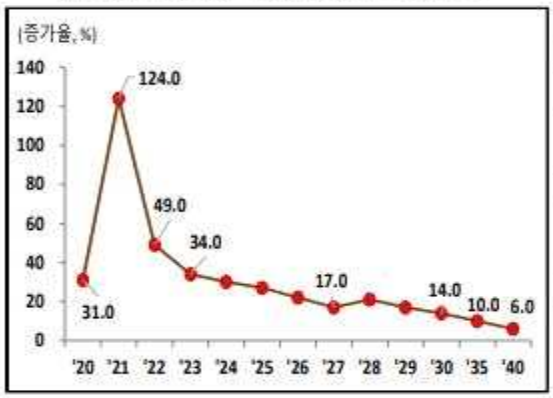
1. 개요

○ 최근 **중국발 2차전지 공급 초과와 전기차(EV) 보조금 폐지 국가 증가** 등 요인으로 **2차전지 수요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향후 2차전지 시장을 둘러싼 **공급망 재조정 경쟁 심화가 예상**

- 최근 미국과 EU는 중국의 2차전지 공급망 패권에 맞서 인플레이션감축법, 배터리법 등 공급망 규제 법안을 통과

- 이러한 정책 규제뿐 아니라, 전기차 보조금 폐지 등 지원도 점차 축소하면서 **향후 전기차 수요 감소에 따른 2차전지의 공급 조정** 국면이 예상

< 세계 전기차 판매 증가율 전망 >



자료: IHS Global Insight, Goldman Sachs.

< 주요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 현황 >

	정책 내용
한국	- '24년 약 100만원 씩 감소 예정
중국	- '23년 전기차 보조금 폐지
영국	- '22년 6월부터 폐지, '25년부터 세제 혜택 폐지
독일	- '24년 상한액을 3,000유로까지 축소
프랑스	- '23년 전기차 보조금 상한액을 6,000유로→ 5,000유로 삭감
스웨덴	- '22.11월부터 전기차 보조금 폐지
미국	- IRA기준, '29년까지 유지 예상 *IRA 기준(원산지 등)에 따라 3,750달러 또는 7,500달러 지급

자료: 한국자동차연구원, 언론 종합.

2. 세계 2차전지 공급망 구조 현황

① 2차전지 교역: 중국이 전세계 수출의 50% 차지

○ 2022년 세계 2차전지 수출시장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중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2차전지에 대한 미국 및 독일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세계 2차전지 시장은 코로나 이후 중국이 전세계 수출의 50%를 차지

• 2022년 기준 **리튬이온배터리(HS 코드 850760)의 전세계 수출국 순위**는 **중국(50.3%), 폴란드(8.6%), 한국(7.3%), 헝가리(7.0%) 등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코로나 이후 세계 3대 수출국의 수출대상국으로 미국과 독일의 수요가 급증

• 2022년 중국, 폴란드, 한국 등 **세계 3대 2차전지 수출국의 수출대상국**은 2019년에 비해 **미국 및 독일에 대한 공급이 확대**

○ 전세계 2차전지 수입시장은 코로나 이후 독일, 미국, 한국 등 주요 전기차 수출 국가들을 중심으로 생산에 필요한 2차전지 수요가 증가

- 세계 2차전지 수입시장은 2019년에는 중국, 홍콩 등 중화권 중심으로 수입 주도

- 코로나 이후 독일, 미국, 한국 등 주요 전기차 생산 국가 중심으로 수요 급증

② 2차전지 생산기지: 중국 중심 속 미국과 독일 간 경쟁 구도

○ 전세계 **2차전지 3대 생산기지는 중국, 미국, 독일**로 전세계 2차전지 **생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중국이 대부분을 차지

- 세계 3대 2차전지 시장은 중국, 미국, 독일 등으로 전세계 생산의 85% 차

• 2023년 5월 기준 전세계 2차전지 생산 규모는 2.8TWh이며, 중국이 전세계 생산의 약 73%인 2,052GWh로 1위 생산국 입지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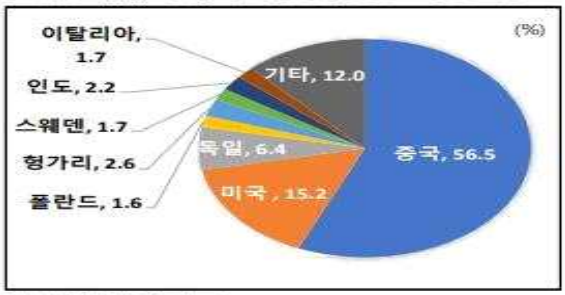
- 향후 2030년에도 전세계 2차전지 생산의 약 57%로 여전히 1위 입지 유지 예상

• 2030년에는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EU의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영향으로 중국의 생산 비중이 2023년보다 16%p 감소한 56.5%로 예상되나, 최대 생산국 지위는 유지될 전망

< 2023 세계 국가별 2차전지 생산 비중 >



< 2030 세계 국가별 2차전지 생산 비중 전망 >



자료: S&P Global Market Intelligence(2023.7.27.) 자료로 재가공.
주: 2023.5(2.8TWh)&2030(6.5TWh), 전세계 리튬이온 2차전지 생산 규모 대비 비중.

○ 2차전지 제조 기업의 경우 전세계 전기차용 2차전지 판매 비중은 중국 기업이 전체의 50%를 상회

- 지난 3년간 세계 전기차용 2차전지 판매에서 중국기업의 비중이 급증

  • 2023(1~8월) 전기차용 2차전지 판매 기준, **세계 Top 10 내 중국기업 비중은 63%**로 한국기업과 일본기업 비중을 크게 압도

  • 중국기업의 전기차용 2차전지 판매 비중은 2022년부터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CATL과 BYD 두 기업 비중만 50%를 상회**

< 전세계 전기차용 2차전지 기업별 판매 비중 >

(단위 : %)

기업	2021	2022	2023(1~8)
CATL(중국)	32.9	37.0	36.8
BYD(중국)	8.7	13.6	15.9
LG 에너지 솔루션(한국)	19.7	13.6	14.2
파나소닉(일본)	12.0	7.3	7.1
SK On(한국)	5.7	5.4	5.1
CALB(중국)	2.7	3.9	4.7
삼성 SDI(한국)	4.8	4.7	4.1
Guoxuan(중국)	2.2	2.7	2.1
Sunwoda(중국)	0.9	1.8	1.4
Farasis(중국)	0.8	1.4	N/A
EVE(중국)	N/A	N/A	2.1
기타	9.6	8.6	6.5
총합계	100	100	100
중국기업(기타 제외)	48.2	60.4	63.0
한국기업(기타 제외)	30.2	23.7	23.4

자료: SNE 리서치 자료로 재가공.
주: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EV PHEV, HEV)에 탑재된 2차전지 총사용량 기준.

③ 2차전지 핵심광물 주도권 : 중국 편중 심화

○ 2차전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에 사용되는 **리튬, 흑연 등 주요 광물에 대한 제련 의존도가 중국에 편중**해 있는 구조

- 2차전지에 사용되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 대표적 5개의 광물은 전세계적으로 특정 국가에서 높은 생산량 및 매장량을 나타냄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차전지의 양극재(Cathode Materials)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은 각각 호주(46.9%), 인도네시아(49%), 콩고(68.4%) 등 국가에서의 전세계 생산 비중이 가장 높음

  • 또, **음극재(Anode Materials)로 사용되는 흑연은 전세계의 65.4%가 중국에서 생산**될 뿐 아니라, 매장량도 중국이 15.8%로 튀르키예

27.3%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다만, 핵심광물들의 제련 및 셀(Cell) 제조 의존도는 70% 이상이 중국에 편중되 있어 실질적인 **2차전지 광물 공급망 주도권은 중국이 장악**한 것으로 분석됨

❍ 2차전지용으로 사용되는 인조흑연 등 포함 총 12개 주요 원자재 대한 전세계 공급망도 탄산리튬 및 황산니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국이 역할 수행

- 주요 12개 2차전지용 원자재 수요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음

④ 주요 전방 산업 영향 : 전기차(EV) 주도권도 중국 중심

❍ 2023년 기준 **전세계 EV 판매 시장 점유율은 중국이 전체의 약 5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EV 수출시장(2022년 기준)도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수출국으로 부상

- 전세계 국가별 EV 판매 대수는 지난 7년간 연평균 53% 성장

  • IEA에 따르면, **전세계 전기차(EV) 판매 대수**는 2016년 70만대에서 2023년 약 1,400만대로 **지난 7년간 연평균 53.3% 증가**

- 한편 2023년(1~8)기준 전세계 주요 EV 판매기업 중 중국기업이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는 등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임

  • 2023년 8월 누적기준 **EV 판매 대수**는 국가별 **중국**기업(BYD, SAIC, Greely, GAC)이 **38.1%**, 미국기업(테슬라) 13.5%, 독일기업(폭스바겐, BMW) 10.4%, 한국기업(현대&기아) 4.3% 등 순으로 조사됨

- 전세계 국가별 EV 수출 비중은 독일, 중국, 미국, 한국 등 순으로 분석됨

⑤ 2차전지 관련 국가별 정책 : 탄소중립을 앞세운 공급망 패권 경쟁 본격화

❍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의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2차전지 관련 정책은 ‘2050 탄소중립’에 대비한 중장기적 대응보다는 2차전지 공급망 패권을 두고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전략적 성격이 강함

- ‘2050 탄소중립’ 선언은 2016년 파리협정 발효 후 3년 만인 2019년부터 시작
- 최근 2차전지 등 ‘탄소중립’형 미래 친환경 첨단산업 패권을 두고 美·EU의 대중국 견제 전략화 추진

3. 시사점

○ 첫째, 글로벌 2차전지 공급망 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2차전지의 주도권 확보 가능 **핵심 신소재 분야 발굴 및 관련 부문 R&D 투자 검토**

- 향후 미국과 EU의 대중국 견제가 심화로 야기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2차전지의 양극재 등 핵심소재 부품의 우리 경쟁력 강화** 모색
- 또,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 2차전지를 구성하는 핵심소재 중 우리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신기술 개발이 시급**

○ 둘째, **미국 및 EU의 2차전지 관련 정책 규제 범위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를 위해 **정책 사전 대응 및 지속적인 활용책 마련** 필요

- 미국의 IRA와 EU의 배터리법(Battery Regulation) 등 내부 공급망 확보가 가속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특히, 2024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EU의 배터리법과 기존의 핵심 원자재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대해 중복 여부 사전 체크 및 검토 요망

○ 셋째, 최근 전기차 보조금 축소 및 중국 공급 초과 등으로 **당분간 2차전지 수요 조정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대규모 생산시설 확대보다는 대체 시장인 폐배터리(Scrapped Battery) 재활용 인프라 확충 구상책 마련**

- 최근 중국, 유럽 등 전기차 보조금 축소 국가 증가, 중국발 공급 초과 등 2차전지 수급이 당분간 조정 국면이 예상되므로 해외 생산시설 및 합작 진출에 대한 속도 조절 고려
- 아울러, SNE 리서치에 따르면 폐배터리 규모가 2025년 44GWh에서 2040년 3,339GWh로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필요

2. 2024년 세계경제 전망과 주요 리스크 요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3. 11.)-

1. 2024년 세계경제 전망

□ [세계경제] 「2024년 세계경제 전망」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바탕으로 작성됨.

○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정책은 최소한 2024년 상반기까지 금리 상단을 유지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고 막후 협상 진행됨.

○ 투자자 위험회피도의 급격한 변화는 없으며,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의 급격한 자본이동 가능성은 낮음.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다소 하회하나 부동산 부문의 급격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음.

○ 불확실성은 있으나 당분간 강달러 기조가 유지되고, 2024년 연평균 유가(WTI 기준)는 82.50달러 수준임

□ 2024년 세계경제는 2023년보다 0.2%p 낮은 2.8%(PPP 환율 기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주요 선진국 대부분 **높은 금리와 부채부담 등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일 전망임

○ **(미국)은 2024년 1.5%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견고한 고용시장에 힘입은 소비지출의 영향이 어느 정도 이어지더라도 **고금리에 대한 부담**으로 2023년만큼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며, **높은 정부부채와 이자 부담 또한 재정의 기여도를 낮추**게 될 것임.

○ **(유로지역)**은 **2024년 1.1%, 영국은 0.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으로, 지난 2023년 5월 대비 모두 하향 조정함. **물가가 점차 하락하면서 구매력이 회복**되면 민간소비가 다소 늘어날 것이나, 성장 약세기조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함.

○ **(일본)**은 고용 및 소득 환경 개선, 기업 실적 호조 등을 기반으로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여 **2024년 연간 1.0%**의 안정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임.

- [신흥국] 주요 신흥국들도 대부분 지난 5월 전망치 대비 하향 조정함.

○ **(중국)**은 정부의 경기 정상화 노력이 지속되겠으나 **부동산 리스크 장기화,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불안요인들을 감안하여 **2023년보다 하락한 4.5%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임.

○ **(인도)**는 **견고한 경제 펀더멘털과 안정적인 금융·정치 환경, 국제사회 분절화에 따른 수혜**로 중기 평균에 근접한 **6.2%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며, 여기에는 2024년 총선 전후의 적극적 재정 역할도 포함됨.

○ **(러시아)**는 **내수 위주의 성장**을 이어가되 **대러 제재가 지속되면서 2024년 1.0%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임.

○ **(브라질)**은 2023년 대비 낮은 **1.4%의 성장**률을 2024년에 기록할 전망임. 여전히 높은 고금리와 농산물 작황의 불확실성 등이 성장세 하향의 원인으로 판단함.

2. 주요 리스크 요인

□ **이번 전망의 키워드는 '당겨쓴 여력, 압박 받는 성장' 이며, 다음과 같은 하방 리스크들이 상방요인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함.**

1] 중국경제의 중장기 저성장 경로 진입

□ **중국경제는 2023년 3/4분기 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4.9%를 기록하는 등 미진했던 리오프닝 효과로부터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부동산 부문의 부진과 내수 침체, 물가 하락, 청년층 고용 악화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한 상태임.**

○ 2023년 중국정부의 목표치인 '5% 내외의 성장률'은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구조적 취약점에 노출되어 있어**

전망의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임.

○ 그 가운데서도 부동산 부문은 중국경제의 약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2022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 투자와 판매, 자금조달 등이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

- 건설, 건자재, 철강, 가구, 금융, 임대 등 부동산 및 연관 산업이 중국 GDP 대비 30%에 이르고, **가계 자산 및 지방정부 수입에서 부동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정부의 규제 강화(2022년 8월) 조치 이후 우려 증대

- 특히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 Local Government Financial Vehicles)의 부채 규모가 2022년 기준 GDP 대비 40% 이상이며, 지방정부 공식 부채보다 많다는 추정이 대다수

○ 그 외에도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저하, 양극화 심화, 대체 투자지 모색에 의한 직접투자 유입 감소, 미중 갈등과 대중국 견제 확대,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중장기적으로 성장 저하를 초래할 많은 요인이 잠재해 있음.

□ 중국경제가 부동산 부문의 부실로 인한 급격한 금융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낮으나, 구조적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과거 수십 년간의 고성장을 멈추고 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3~5%대로 내려올 확률은 낮지 않은 것으로 평가함

○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부동산 부문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 또한 마땅치 않으며, 중국정부의 정책의지가 관철될 수 있는 물적·인적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물적 여건이란 대외 환경 및 관계, 인구구조 변화, 자산시장 침체, 불평등 확대 등을 의미

○ 중국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주변국에 불균등하게 나타날 것임

- 생산과 교역으로 더 밀접하게 엮여 있는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등**

인근 국가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선진국 가운데서는 독일 또한 비슷한 위치에 있음

-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아프리카 저개발국 또한 영향을 받을 전망

2) 고부채와 고금리의 이중 작용에 따른 성장 저하

□ 전 세계 민간 및 공공 부채가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급격히 풀렸던 유동성이 다소 회수되기는 했으나 위기 이전 수준으로까지 부채가 축소되지는 못한 상황임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전 세계 부채는 코로나19 위기 시작 해인 2019년 말 기준 GDP 대비 229%에서 2020년 258%까지 급증한 후 2022년에 238%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매우 높음

- 2022년 기준 **공공부채는 GDP 대비 92%, 가계부채는 55%, 비금융기업 부채는 91%**에 이름

- 주요 선진국에서 공공부채와 민간부채 수준이 매우 높은 가운데 신흥국의 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며, 특히 **중국은 최근 부동산 문제와 맞물리며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음

○ 약간의 디레버리징(deleveraging, 부채정리)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따른 민간활동 위축 및 차주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성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금리 하락에 대한 전망이 아직 시계(視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일례로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 이자율(prime mortgage interest rate) 평균**이 **위기 전 고점을 넘어 5%를 상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도 평균 2,000달러를 돌파함

- 자금조달 여건 악화 및 기존 차입액 상환 부담 증가로 투자와 소비 등 민간활동에 제약이 걸리고 있음

□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당분간 이어질

고부채와 고금리 상황이 추가적인 경제활동 하향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높음

○ 물가 불안이 해소되고 주요국에서 빠르게 올린 기준금리의 상단을 확인하기까지 아직 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고금리-고부채-중물가 시대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임

- **기업**들은 투자처 및 신규 수요 발굴이 어렵고, 공급망 재배치와 요소 투입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증가할 것이며, **가계**의 경우도 부채 축소와 역자산효과,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여타 소비지출에 제약이 걸릴 것임

○ 국가별로는 부채가 매우 빠르게 늘어난 국가들, 공공·가계·기업 중 두 부문 이상에서의 부채 부담이 높은 국가들을 유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각국 내에서는 이자보상배율이 높거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중이 높은 한계 기업 및 가계의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야 함

- 특히 **경제의 기초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체에 대한 우려로 **섣부른 금융완화 정책이 도입된다면 부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

3) 지정학적 충돌 악화와 추가적 공급 충격

□ 2020년 2월 24일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2023년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서 전쟁이 발생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공급망 지체 충격에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큰 고통을 겪고 있음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나타난 유가 충격은 1990년 걸프전 발발 당시와 비교하면 그 상승폭과 지속성이 제한적이기는 했지만, 문제는 글로벌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 발생함으로써 그 **충격이 경제에 누적**되어 나타났다는 것임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경우 실물경제로의 충격은 아직 미미하나 **사태의 전개 방향에 따라 특히 유가 관련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주변국으로까지 확산되는 것임

○ 국제사회가 끊임없이 중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또한 단기간 내에 종료되기는 어려워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현재로서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으나, **만일 양자간 충돌이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국제유가는 매우 쉽게 100달러를 돌파**할 것임

- 만일 **유가가 급등하는 경우**, 각국 정부들로서는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기준금리의 재인상** 외에는 마땅치 않으며, 그간의 물가안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금리는 한 단계 더 높아져 세계경제 성장률에 매우 큰 충격을 줄 것임.

3. 럼피스킨(LSD) 발생과 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23. 11.)-

1. 럼피스킨(LSD) 특성과 주요국 발생 동향

1) 럼피스킨 특성

□ 럼피스킨(Lumpy Skin Disease: LSD)은 **흡혈 곤충을 매개로 소, 물소 등에 감염되는 질병**

○ 우리나라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관리대상 질병으로 분류됨(이환율* 5~45%, 폐사율 10% 이하)

* 이환율(morbidity): 집단 중 질병에 걸리는 환자(감염 가축) 비율

○ **주요 증상**은 고열(41℃ 이상) 후 피부·점막에 결절(단단한 혹) 형성(지름 2~5cm), 우유 생산량 감소, 식욕부진, 쇠약, 과도한 침 흘림, 눈·코 분비물 증가, 림프절 비대, 가슴·다리 등 부종, 임신소의 유산, 수소의 불임 등임.

□ **흡혈 곤충, 오염물질 등에 의한 근거리 전파와 감염 가축 이동에 의한 장거리 전파 가능**

○ **[근거리 전파]** 럼피스킨의 **주요 전파요인**은 **흡혈 곤충**(모기류, 흡혈 파리, 수컷 진드기)**에 의한 기계적 전파임**. 흡혈 곤충에 의한 기계적 전파 이외에도 감염된 동물에 의해 오염된 사료나 물 섭취 및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전파도 가능함. 감염동물의 침이나 피부 병변, 콧물, 우유, 정액 등도 감염원이 될 수 있음

○ **[장거리 전파] 감염 가축의 이동**으로 장거리 전파도 가능함. 현재까지 공기를 통한 전파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표 1〉 럼피스킨(LSD)과 주요 제1종 가축전염병 비교

구분		럼피스킨 (Lumpy Skin Disease: LSD)	구제역 (Foot and Mouth Disease: FMD)	아프리카돼지열병 (African Swine Fever: ASF)
관리		제1종 가축전염병	제1종 가축전염병	제1종 가축전염병
감수성 동물		소(한우, 젖소, 육우)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	돼지(사육돼지, 야생멧돼지)
폐사율		10% 이하	성우 5% 미만, 새끼돼지 50%,	약 100%
잠복기		4~14일(최대 28일)	2~8일(최대 14일)	일반적으로 4~19일
전파		• 흡혈 파리류(침파리 등)와 모기류(숲모기속, 집모기속 등) 등 곤충, 오염물질 등으로 전파 • 원거리 전파는 감염축 이동에 의해 발생	•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 전파나 감염지역 내 사람, 차량, 물, 사료, 장비 등에 의한 간접 접촉 전파 • 일정한 요건에서 공기로 전파 (육지 60km, 바다 250km 전파 가능)	• 감염동물과 직접 접촉 전파나 감염지역 내 사람, 차량, 물, 사료, 장비 등에 의한 간접 접촉 전파 •열처리하지 않은 잔반 급여 • 야생멧돼지, 물렁진드기 등 매개체 전파
세계 최초 발생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	16세기로 추정 (1897년 구제역 원인 규명)	1921년 아프리카 케냐
국내	첫 발생	2023년 10월	구체적 기록 2000년 3월(O형) (최초 발생은 1900년대로 추정)	2019년 9월
	최근 발생	2023년 83건 (11월 7일 14시 기준, 발생 중)	2023년 11건 (O형)	2023년 10건
비고		• 럼피스킨 백신 존재 • 2023년 긴급 백신접종 실시	• 2011년부터 전국 백신접종 실시 • 구제역은 혈청형에 따라 7개의 혈청형으로 구분(A형, O형, C형 등),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O형과 A형 발생	• 2019년부터 매년 산발적 발생 • 야생멧돼지 ASF 지속 발생 • 현재 ASF 백신이나 치료제 없음.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홈페이지(https://wahis.woah.org/), 검색일 2023.11. 1.;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FMD-AI2/), 검색일: 2023. 11. 8.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2) 세계 럼피스킨(LSD) 발생 연혁과 대륙별 전파 현황

□ 럼피스킨(LSD)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최초 발견

○ 럼피스킨은 1929년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1943년 보츠와나와 남아프리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800만 마리 이상의 소가 감염되는 등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였음. 이후 케냐, 수단, 나이지리아, 가나 등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으로 확산되었음

○ 아프리카 대륙 밖에서의 럼피스킨 발생은 1989년 중동지역인 이스라엘에서 처음 보고되었음(WOAH). 2012~2013년에는 레바논, 터키, 이라크 등 중동지역 국가들로 확산됨. 2014년에는 유럽으로 전파되었으며, 2015~2018년에는 그리스, 불가리아, 러시아 등으로 확산되었음

□ 2019년 동북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서 최초 발생

○ 럼피스킨의 아시아지역 첫 전파사례는 2016년 중앙아시아 지역 카자흐스탄으로의 전파임. 2019년에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로 확산되었고, 2020년에는 베트남으로 전파되면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됨. 2023년 10월에 한국으로 전파됨

□ 2006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총 92건 럼피스킨(LSD) 발생 보고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2006년부터 2023년 10월 말까지 총 92회의 럼피스킨 발생을 보고하고 있음. **대륙별 발생 횟수는 유럽 31회, 아시아 30회, 중동 19회, 아프리카 12회**임

○ 국가별 발생 건수는 회차별로 1~2건에서 많게는 666건(2021년 태국)에 이름. 2006년 이후 가장 많이 발생한 국가는 러시아(17회)이며, 발생 기간은 2주에서 1년 이상 소요된 사례도 보고됨

〈표 2〉 연도별·국가별 럼피스킨(LSD) 발생 현황(2023년 11월 1일 0시 기준)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아프리카·중동	팔레스타인(1), 이스라엘(18), 시리아(2)	시리아(1)	지부티(1), 나미비아(2)	아프가니스탄(1)	이스라엘(4), 리비아(11, 발생 중)
유럽·중앙아시아	러시아(29)	러시아(4)	러시아(52)	러시아(4)	러시아(4, 발생 중)
서남아시아	방글라데시(4), 인도(8)	네팔(21), 부탄(7), 스리랑카(6)	파키스탄(4)	인도(1)	부탄(20, 발생 중)
동북아시아	중국(1)	중국(6), 대만(34), 홍콩(1)	몽골(59), 대만(1)	몽골(4)	한국(발생 중)
동남아시아	-	베트남(276)	미얀마(1), 라오스(9), 말레이시아(322), 태국(666), 캄보디아(61)	인도네시아(46), 싱가포르(1)	-
합계	7개국 63건	9개국 356건	11개국 1,178건	6개국 57건	5개국(집계 중)

자료: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홈페이지(https://wahis.woah.org/), 검색일 2023.11. 1.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2. 국내 럼피스킨 발생 및 대응

1) 2023년 10월 20일 럼피스킨(LSD) 국내 첫 발생

□ 우리나라는 2023년 10월 20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최초로 발생함. 이후 충남 당진, 경기 평택, 김포, 충남 서산, 태안, 인천 강화 등 서해안을 중심으로 확대되었으며, 11월 7일 14시 기준 경상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도 지역에서 발생

○ 현재 럼피스킨은 전국 7개 도, 1개 시, 83개 소 농장에서 발생하였음. 충청남도가 34호로 가장 많으며, 경기 26호, 인천 9호, 강원 6호, 전북 3호, 전남과 충북이 각각 2호, 경남 1호의 농장에서 발생함

○ 총 살처분된 소 마릿수는 5,480마리이며, 그중 한우는 3,044마리(전체 사육의 0.1%), 젖소는 1,712마리(0.4%), 육우는 724마리(0.5%)임.

○ 일별 발생 건수는 10월 23~24일(발생 5~6일 차) 최고치(11건) 기록 후 감소 추이, 11월부터는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 발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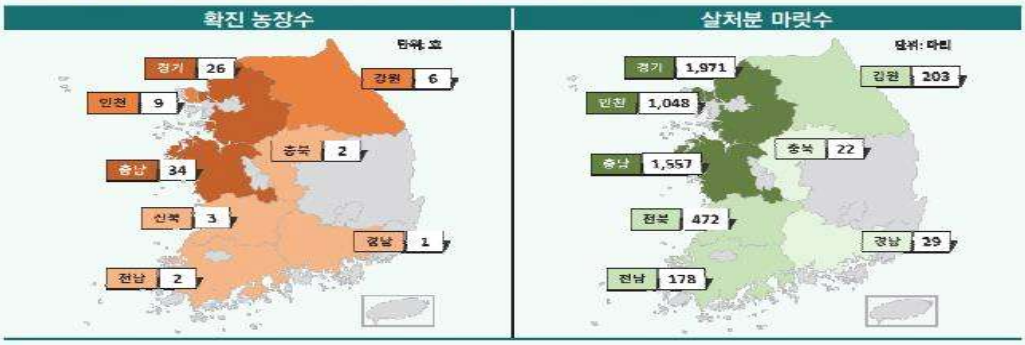
〈표 3〉 시도별 럼피스킨(LSD) 발생 건수 및 살처분 마릿수(2023년 11월 7일, 14시 기준)

단위: 건, 마리

지역	발생 건수	살처분 마릿수			
		합계	한우	젖소	육우
충남	34	1,557	1,065	492	0
경기	26	1,971	917	1,054	0
충북	2	22	22	0	0
인천	9	1,048	158	166	724
강원	6	203	203	0	0
전북	3	472	472	0	0
전남	2	178	178	0	0
경남	1	29	29	0	0
합계	83	5,480	3,044	1,712	724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FMD-AI2/), 검색일: 2023. 11. 8.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그림 2〉 시도별 럼피스킨(LSD) 확진 농장(2023년 11월 7일, 14시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afra.go.kr/FMD-AI2/), 검색일: 2023. 11. 8. 자료를 이용해 작성함.

2) 한우고기 도매가격 이동 제한 조치 영향 등으로 일시적 상승 이후 안정세

□ 전국 단위 이동 중지 명령에 따른 수급 차질로 한우고기 도매가격 상승, 이동 중지 명령 해제 이후 안정세

○ 전국 단위 이동 중지 명령으로 도축 물량이 감소해 LSD 발병 1주 차(10/20~26) 한우 등급 판정 마릿수는 발병 1주 전 동 기간(10/13~19) 대비 10.0% 감소한 1만 5,254마리였음. LSD발병 1주 차(10/20~26) 한우고기 도매가격은 등급 판정 마릿수 감소와 더불어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행사 준비에 따른 유통 업체 물량 확보 수요 영향으로 발생 1주 전 동 기간(10/13~19) 대비 6.4% 상승한 kg당 1만 9,043원에 형성되었음

○ 전국 단위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이후, 도축 물량이 회복하면서 LSD 발병 2주 차(10/27~11/2) 등급 판정 마릿수는 발병 1주 차 동 기간(10/20~26) 대비 22.7% 증가한 1만 8,713마리였음. LSD 발병 2주 차(10/27~11/2) 한우

고기 도매가격은 발병 1주 차 동 기간 대비 10.7% 하락한 1만 7,008원에 형성됨

3) 럼피스킨(LSD)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일시 이동 중지 및 긴급 백신접종

□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단위 이동 중지 및 차단방역 강화

○ 최초 럼피스킨 발생 직후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을 대상으로 10월 20일 14시부터 22일 14시까지 48시간 전국 단위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되었음. 이후 LSD 최초 발생 시·도를 대상으로 24~48시간 이동 중지 명령이 이루어짐(인천·경기·충남 10/22~24, 충북 10/23~24, 강원 10/24~25, 전북 10/25~26, 전남 10/29~30, 경남 10/30~31). 또한 전국 일제 집중 소독 및 축사 소독·방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함

□ 전국의 소 대상 긴급 백신접종 명령 발령

○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6일 LSD 전파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소 전 두수를 대상으로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함. LSD 백신은 국내에 사전 비축된 54만 마리분과 10월 28일 127만 마리분, 10월 29일 62만 마리분, 10월 31일 210만 마리분을 수입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배부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음(11/6, 14시 기준, 407만 6,000마리 중 385만 9,000마리 접종 완료(접종률 95.0%))

○ 해외의 경우 2021년부터 일부 국가에서 럼피스킨 발생에 따른 백신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주요 백신접종 국가는 파키스탄, 몽골, 이스라엘, 러시아, 말레이시아 등임. 그리스와 몽골은 백신접종과 함께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살처분 정책만 시행하는 국가는 불가리아, 베트남, 사우디아리비아 등임(WOAH)

4. 국민연금 개혁 방향과 향후 과제

–하나금융경영연구소(2023.10)–

□ 국민연금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연금개혁을 논의할 시점 도래

○ 지난 10여년 동안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

- '98년과 '07년 2회에 걸쳐 재정안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추진되었고 그 이후 소소한 제도 변경에 그침

○ **재정 안정화, 충분한 노후소득보장, 세대 간 형평성 등 3대 연금개혁 원칙**을 완수하기 위해 추가적인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

□ 국민연금의 재정위기는 급격한 사회구조적 변화와 연금 수급의 특성에 기인

○ **(환경적 원인)** 잠재성장률이 4.1%(‘00~ ‘10)에서 2.4%(‘18~ ‘22) 수준으로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 합계 출산율 1.23명(‘10)→0.78명(‘22), 평균수명 1.23명(‘10)→83.6세(‘21), 베이비 부머(55~63년생) 697만 명의 은퇴시기 도래 등

○ **(연금 수급의 특성)** 지역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5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이 증가**하고, **최근 노령연금 수급자 수와 수급액이 급증**하기 시작

- 지역 가입자 867만 명(‘10)→665만 명(‘23.6), 50세 이상 가입자 비중 23%(‘10)→ 32.2%(‘23.6), 노령연금 수급자 233만 명(‘10)→546만 명(‘23.6)

□ 지난 10.27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

○ 동 위원회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지속가능성, 재정방식 개선의 공론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는 5대 분야 15개 과제를 선정

○ 우선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가운데 **인상 속도는 연령별로 차등화**하고 **지급보장의 명문화**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조**

○ **재정확보**에 있어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 **실질소득 개선에 집중**하고 **기초연금액의 단계적 인상**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현재보다 1%p 이상 높이**는 **방안** 제시

○ 다만,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조정, 소득대체율 조정 등은 차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재정안정론과 노후소득강화론을 중심으로 논쟁 심화

○ **재정안정론**은 재정소진을 최대한 방어하기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 지급개시 연령의 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

○ 이에 반해 **노후소득강화론**은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을 통해 부족한 노후 소득을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

○ 지속가능한 노후보장을 위한 구조개혁에서 사회적 합의는 중요한 요소

□ 연금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모수개혁과 함께 기초연금, 사적연금 등과 연계한 연금 구조개혁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

○ **소득대체율 문제**는 세대 간 형평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이 외에 **연금수급액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 연금 관련 세제혜택 강화, 수령방식의 연금화 유도 등을 통해 **사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총 소득대체율(공적연금+사적연금)의 개선**을 유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제5차 종합운영계획(안)】

5대 분야	15대 과제	주요 내용
노후소득보장 강화	수급자의 실질소득 제고	의무가입상한 연령 순차적 조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 현행 유지
	급여제도 개편	노령연금 감액제도 폐지 /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조정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다층노후보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공론화 추진
세대 형평 및 국민 신뢰 제고	지급보장의 명문화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법 개정
	크레딧 제도 확대	출산 크레딧 및 군복무 크레딧의 적용 기간, 대상 확대
	재정방식 개선 논의	자동안정화 장치 및 확정기여방식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추진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보험료율 인상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공론화 추진 / 인상속도 연령그룹별 차등화
	수급개시 연령 조정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 성숙 후 논의, 다른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고려
	국고 지원 확대	직접적인 재정지원 < 실질소득 개선에 집중
기금운용 개선	기금수익률 제고	기금 수익률 1%p 이상 추가
	기금운용 인프라 강화	'28년까지 해외투자 비중 60%로 확대, 대체투자 분야 인력 확충
	자산배분체계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다층노후소득보장 정립	기초연금 강화	기준연금액의 단계적 인상 (40만원)
	사적연금의 활성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활성화, 개인연금 홍보 강화
	실태 정밀분석	포괄적 연금통계(통계청) 활용도 제고

5. 메타버스의 활용경험이 청소년의 행동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3. 10.)-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문헌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일반적인 **메타버스의 개념은 4가지 영역**으로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임**(ASF, 2007), 즉, 메타버스의 콘텐츠 속성에 따라 가상세계와 거울세계를 나타내는 가상현실(VR)과 현실의 세계에 가상의 정보를 더해주는 증강현실(VR), 그리고 라이프로깅임 (계보경 외, 2021)

[표 1] 메타버스의 4가지 유형

구분	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	라이프 로깅 (Life logging)	거울세계 (Mirror Worlds)	가상세계 (Virtual Worlds)
정의	현실공간에 가상의 2D 또는 3D 물체를 겹쳐져 상호작용하는 환경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쳐, 저장, 공유하는 기술	실제 세계를 그대로 투영한 정보가 확장된 가상세계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
특징	위치기반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마트 환경 구축	증강기술을 활용해 사물과 사람의 정보를 기록	가상지도, 모델링 GPS 기술 활용	이용자의 자아가 투영된 아바타 간의 상호작용 활동에 기반
구현 가치	현실세계와 판타지, 편의성을 결합한 몰입 콘텐츠 제공	방대한 현실세계의 경험과 정보를 언제든지 확인 가능하며 타자와 공유 가능	외부정보를 가상공간에 통합, 확장함으로써 활용성 극대화	다양한 개인들의 활동이 가능한 현실에 없는 새로운 가상공간을 제공
핵심 기술	- 비정형 데이터 가공 - 3D 프린팅 - 5G 네트워크	- 온라인 플랫폼 - 유비쿼터스센서 - 5G 네트워크	- 블록체인 기술 - GIS 시스템 - 데이터 저장, 3D 기술	- 그래픽기술, 5G 네트워크,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활용 사례	- 포켓몬Go - 운전석 앞의 HUD - SNOW 앱 - 코카콜라 프로젝트 - 방탈출 게임 - 3D 아바타를 통한 SNS 활동 - 에어버스, BMW의 증강현실 스마트 팩토리 - 디지털 교과서 실감형 콘텐츠	- S-health, Apple - 나이키+러닝 - 차량 블랙박스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페북 등) 매체의 블로그, Vlog, 피드 등	- 구글 Earth, 네이버, 카카오 지도 - 에어비앤비 - 미네로바스쿨 - Zoom 회의실 - 몰드잇 디지털 실험실 - 배달의 민족 - 직방, 다방 등	- 포트나이트 - 마인 크래프트 - 로블록스 - 동물의 숲 - 제페토 - 버버리 B서프 - 시뮬레이션 플랫폼
부작용	- 현실이 중첩된 증강현실 공간 속의 혼란 - 증강현실 속 캐릭터 등에 대한 소유권	- 초상권 및 재산권 침해 - 내부기밀 유출 및 겸업금지위반 등	- 정보조작의 문제 - 거대플랫폼 라인 효과로 불공정거래	- 현실세계의 회피 - 도덕적, 윤리적 문제를 일으킬 무질서 우려

* 출처: 계보경 외(2021). 메타버스(Metaverse)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한계. 3쪽의 〈표 Ⅰ-1〉과 윤정현(2021). Metaverse,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넘어. 6쪽의 〈표1〉의 내용을 연구자가 정리하여 제시함.

○ 2021년 하반기 교육통계연보를 토대로 표본설계를 실시하여, 권역 및 학교급으로 층화한 층화다단계표집을 통해 **전국 중고등학교 총 1,506명** (중학교 840명, 고등학교 666명)에 대한 **메타버스 활용의 인식조사를 실시**함

○ **메타버스가 청소년 활동 역량 향상에 미치는 기대 효과**를 9점 척도(매우 활용될 것, 보통, 전혀 활용되지 않을 것이다 등)로 조사한 결과 메타버스는 **전반적으로 청소년 활동 역량을 증진하는데 활용**될 것으로 응답자들은 기대하고 있으며, 특히 **상상력 향상(7.08), 창의력 향상(6.93) 등에 보다 높은 활용도**를 보일 것으로 기대함

○ 이에 본 연구는 실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메타버스 활용성과를 행동실험을 통해 분석하여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메타버스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살펴보고, 청소년정책의 혁신모델로서 메타버스 기술이 접목 혹은 활용되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연구설계와 연구방법

□ 연구설계

○ 2022년 초 메타버스 체험 시설을 갖춘 서울 소재 구립 청소년 시설 한 곳을 섭외하여, 해당 시설과의 협조 하에 2022년 7~8월 중 메타버스 체험 신청을 한 청소년을 체험 예정 시기(7월, 9월)에 따라 두 집단(7월 체험자, 9월 체험자)으로 분류하였음

○ 해당 시설에서 제공한 메타버스 체험 활동은 크게 네 가지임, 첫째, 가상세계(VR) 체험으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가상의 공간에서 미래 직업에 대한 진로 체험을 하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설계하는 활동. 둘째, 증강현실(AR) 체험으로 시설 내 증강현실 포인트를 활용한 시설 소개와 지역사회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AR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활동, 셋째, 거울세계 체험으로 VR 기기를 착용하고 구글 어스 및 로드맵 기반의 가상공간을 활용한 해외여행을 체험하는 활동, 넷째, 라이프로깅 체험으로 VR 기기 착용 후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한 자신의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활동임

○ **7월 체험자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한 직후인 2022년 8월 초에 7월 체험자와 9월 체험(예정)자를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함. 이어서 **9월 체험자가 메타버스 서비스를 체험한 직후인 2022년 9월 말에 1차 설문조사와 동일한 대상자에 대하여 2차 설문조사를 실시**, 1차 설문조사에 참여한 209명 중 약 95%에 해당하는 198명이 2차 설문조사에 참여함. 1, 2차 설문조사는 동일한 문항으로 응답자의 성별, 학년 등 인적 속성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체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성과지표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함

[표 2] 연구설계 요약 시기별 메타버스 체험(처치) 여부 (○=체험; ×=미체험)

시기	2022년 7월	1차 설문조사	2022년 9월	2차 설문조사
처치집단(9월 체험자)	×	×	○	○
통제집단(7월 체험자)	○	○	○	○

○ [표2]은 이상의 연구설계를 요약하여 보여줌. 7월 체험자는 1, 2차 설문조사 모두 메타버스 활동을 체험한 상태에서 응답함.

○ 반면, 9월 체험자는 1, 2차 설문조사 사이에 메타버스 체험 여부의 변화가 발생함. 1차 설문조사 당시에는 메타버스 활동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답한 반면, 2차 설문조사에는 메타버스 활동을 체험한 상태에서 응답하였기 때문임. 본 연구는 **1, 2차 설문조사 사이에 메타버스 체험 또는 처치(treatment)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처치 상태의 변화가 발생한 9월 체험자를 처치집단(treatment group)**으로, **처치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7월 체험자를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통칭함

□ 행동경제학 실험의 조사도구

○ **메타버스에 관한 인지도**는 5점 척도(1점: 전혀 모른다 -3점: 보통 -5점: 매우 잘안다)로 조사함. 메타버스 사용 빈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응답자가 메터버스를 이용한 일 수(0～7일)를 객관적으로 조사함

○ **삶의 만족도**는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일주일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11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6점: 중립 -11점: 매우 만족)로 조사함. **TIPI 성격 지표**는 평소 성격에 관한 10개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응답자의 다섯 가지 성격 측면(외향성, 우호성,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개방성)을 각각 9점 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 -5점: 중립 -9점: 매우 그렇다)로 평가함. **핵심역량 지표**는 응답자의 여섯 가지 핵심역량(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업, 사회정서, 진로개발)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평가를 각각 9점 척도(1점: 매우 낮다 -5점: 보통 -9점: 매우 높다)로 조사함

○ **행동실험 문항**은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메타버스 체험이 청소년의 친구 관계를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친구 관계

에 관한 세 가지 질문을 개발함

○ **첫째, 응답자가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에 각각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실험경제학의 독재자 게임(dictator game)을 응용하여 측정**함. 구체적으로 '귀하의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친구 중 한 명을 상상해 봅시다. 누군가 귀하께 1만원을 주면서 이 친구와 나누어 가지라고 하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본인의 몫과 친구의 몫으로 각각 얼마를 배정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였음. 전체 금액이 1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친구 몫으로 많은 금액을 배정할수록 본인 몫은 자연히 감소함. 따라서 응답자가 친구 몫으로 배정한 금액의 비중은 해당 친구에게 응답자가 자신의 이익을 희생해가며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로 이해할 수 있음. 본 연구는 위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가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친구의 몫으로 배정한 금액의 비중을 산출하여, 그 비중을 응답자가 온라인(또는 오프라인) 친구에게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의 척도로 사용하였음

○ **둘째, 응답자가 자신의 시간 자원을 온라인 친구 사이에서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조사**하였음. 구체적으로 '귀하의 오프라인 친구 한 명과 온라인 친구 한 명을 각각 상상해 봅시다. 귀하께 1시간의 자유시간이 주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귀하께서는 오프라인 친구와 온라인 친구 중 누구와 1시간의 자유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단, 오프라인 친구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친구와는 온라인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였음

○ **셋째, 응답자가 자신의 고민을 온라인 친구와 오프라인 친구 중 누구와 의논하고 싶은지를 조사**하였음. 구체적으로 '귀하의 오프라인 친구 한 명과 온라인 친구 중 누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겠습니까? 오프라인 친구와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친구와는 온라인에서 고민을 나눈다고 가정하고 답변해 주세요.' 라고 질문하였음

3. 연구결과

□ 응답자의 인적특징

○ 성별로는 여성 비중이 67.5%로 남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학년별로는 중학교 2학년이 36.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중학교 3학년이 16.3%를 차지하였음

○ 차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하면, 차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여성 비중은 낮고 중학교 2학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았음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성별, 학년 등 각종 고정적인 특성들을 모두 통제한 상태에세 메타버스 체험의 효과를 분석함

□ 기초통계량

○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1, 2차 설문조사 결과를 포괄하는 전체 표본(N=407)에 대하여 각 성과지표와 기초통계량을 보여줌

○ 행동실험에서 **가상적으로 주어진 1만원** 중 **온라인 친구에게 할당한 몫의 비중은 약 37.2%**인데 반해, **오프라인 친구에게 할당한 몫의 비중은 약 46.9%**임

○ **주어진 1시간**을 오프라인 친구 대신 **온라인 친구와 보내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약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개인적 고민**을 오프라인 친구 대신 **온라인 친구와 의논하겠다는 응답의 비중**은 시간 배분에 관한 응답 비중보다 약 두 배 높은 **19.7%로** 나타남

○ 전반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온라인 친구보다 **오프라인 친구에게 더 높은 친밀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메타버스 체험의 효과 추정치

[표 5] 메타버스 체험의 효과 추정치

성과지표(단위)	메타버스 효과	표준오차	메타버스 효과(Z점수)	표준오차
메타버스 인지도(1-5점)	0.205*	(0.114)	0.250*	(0.140)
지난 주 메타버스 이용일 수(0-7일)	0.727**	(0.314)	0.400**	(0.172)
삶의 만족도(1-11점)	0.181	(0.295)	0.089	(0.144)
TIPI 성격: 외향성(1-9점)	0.625**	(0.277)	0.297**	(0.132)
TIPI 성격: 우호성(1-9점)	-0.141	(0.257)	-0.081	(0.147)
TIPI 성격: 성실성(1-9점)	0.189	(0.231)	0.110	(0.135)
TIPI 성격: 정서적 안정성(1-9점)	0.070	(0.230)	0.044	(0.144)
TIPI 성격: 개방성(1-9점)	0.145	(0.202)	0.094	(0.131)
핵심역량: 비판적 사고(1-9점)	0.298	(0.219)	0.181	(0.133)
핵심역량: 창의성(1-9점)	0.618**	(0.261)	0.357**	(0.151)
핵심역량: 의사소통(1-9점)	0.394	(0.259)	0.245	(0.161)
핵심역량: 협업(1-9점)	0.220	(0.263)	0.134	(0.161)

성과지표(단위)	메타버스 효과	표준오차	메타버스 효과(Z점수)	표준오차
핵심역량: 사회정서(1-9점)	0.264	(0.277)	0.157	(0.164)
핵심역량: 진로개발(1-9점)	0.565**	(0.282)	0.317**	(0.158)
1만원 중 온라인 친구 몫 비중(0-1)	0.059*	(0.033)	0.278*	(0.156)
1만원 중 오프라인 친구 몫 비중(0-1)	0.018	(0.016)	0.154	(0.141)
1시간 온라인 친구와 보냄(예=1)	-0.081*	(0.046)	-0.260*	(0.147)
고민을 온라인 친구와 의논(예=1)	0.050	(0.059)	0.125	(0.149)

* 주: 괄호 안은 강건 표준오차를 의미함. 통계적 유의성 *<0.1, **<0.05, ***<0.01, Z점수는 Z점수로 표준화

○ [표5]는 최소제곱추정법(OLS)으로 추정하였을 때 β에 대한 추정치를 요약하여 보여줌

○ 이를 통해 메타버스 체험으로 인해 **응답자가 보고한 주 메타버스 이용일수가 약 0.727일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또한 메타버스 청소년 시설을 통한 메너버스 체험 활동이 정상적으로 실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1~5점으로 평가된 메타버스 인지도도 약 0.205점 증가하였고, 이는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이와 더불어 1~9점(9점 만점)으로 측정된 **성격 지표 중에는 외향성이 0.625점 증가**하였음. 또한 1~9점(9점 만점)으로 측정된 **역량 지표 중에는 창의성과 진로개발 역량이 각각 0.618점 및 0.565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주어진 가상의 1만 원을 본인과 온/오프라인 친구 간 배분하는 행동실험 문항**에서는 **온라인 친구에게 배분한 금액의 비중이 5.9% 포인트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음. 반면, 오프라인 친구에게 배분한 금액의 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음

○ 끝으로 **주어진 가상의 1시간을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친구와 보내겠다는 응답은 8.1% 포인트 오히려 감소**함. 반면, 주어진 가상의 고민을 온라인 공간에서 온라인 친구와 나누겠다는 응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음. 한편 온라인 친구에 대한 금전적, 시간적 자원 배분의 변화는 통계적 유의성이 10% 수준으로 다소 낮으므로, 해석상의 주의가 필요함

○ **유의한 영향이 발견된 추정치 중 가장 큰 효과는 창의성(0.357 표준편차), 진로개발(0.317 표준편차), 외향성(0.297 표준편차)에서 상대적으로 큰 효과가 발견**되었음

4. 정책제언

○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메타버스의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살펴보고, 실제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메타버스 활용성과 행동실험을 통해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한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메타버스의 경험은 창의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체험과 시도,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기술에 메타버스가 효과적인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
- **둘째, 메타버스의 경험은 진로개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따라서 메타버스는 **청소년시설이나 학교현장에서 진로개발 프로그램에 접목되어 활용**될 경우 그 효과 클 것으로 기대됨
- **셋째, 메타버스 체험은 온라인 친구에 대한 금전적 자원 배분을 증가시켰으나, 시간적 자원 배분은 감소**시키는 경향도 발견되었음. 이는 **메타버스의 경험은 온라인 친구에 대한 친밀감은 높일 수 있지**만 실제 가상의 공간이 고민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음. 따라서 **메타버스가 상담분야에 널리 활용되는 장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함.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Ⅶ 타 시·도 최근 시책

1. 전남도-도의회, 전국 최초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 맞손

-전라남도(2023. 11. 8.)-

- 청년층 귀산촌 임업 전문가 양성 정책 발굴·지원체계 절실
- 정적 정착·임업인 전문교육 운영 법적 지원 근거 마련키로

○ 전라남도는 청년 임업인 양성 등 체계적 산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전남도의회와 함께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산림학교 조례 제정**은 **임업인 전문교육 분야로서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중요성을 감안해 전남도가 도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 전남에는 **매년 4만여 명의 인구가 귀촌**하고 있다. 그중 40대 이하가 56%를 차지하는 등 **젊은층의 귀촌 인구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이러한 추세에 따라 임업 분야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청년층 귀산촌 임업 전문가 양성**을 위해 임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정책 발굴과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 이에 따라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가 힘을 모아 임업인 전문교육 운영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전남지역 귀산촌 유입인구의 안정적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현재 전남지역 임업 전문교육을 전담하는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2012년 버섯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교육과정을 확대·개편하면서 **12년째 산림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12개 교육과정에 대해 1천546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등 임업인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또 **2018년 산림청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등록**해 전남지역 임업 후계자를 육성하고 있다. 산림청에서 인정해주는 법정교육과정인 전문교육과 그 밖의 기능인 교육, 자격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폭넓은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 이번 신규 제정할 조례에서는 ▲도지사 책무 ▲교육대상 ▲교육의 범위 ▲교육비 징수 ▲교육비 반환 ▲수료증 발급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도민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앞으로 귀산촌이 활발히 실현되도록 다양한 임업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올해 상반기에 산림청 전문교육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1천400만 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임업직불제의 법정의무교육도 올해부터 지원하는 등 도민 수요맞춤형 산림교육을 실시해가고 있다.

2. 경남 거창에 외국인계절근로자 기숙사 착공한다!

-경상남도(2023. 10. 26.)-

-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 전국 최초 착공
- 외국인계절근로자 주거 안정을 통한 지속가능 농촌 고용인력 확보
- 농가는 숙식장소 해결, 근로자는 보다 편안한 주거환경, 노동자간 소통 창구 역할

○ 경상남도는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으로 진행하는 **농업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전국 10건 중 **거창군 거창읍에 전국 최초로 착공**했다고 26일 밝혔다.

○ 경남 거창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은 **72명의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총사업비 50.1억 원**(국비 7.5억 원, 도비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 군비 31.1억 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118.08㎡ (지상4층) 규모**로 2023년 10월 26일 착공해서 2024년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 최근 우리 농촌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에 일손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2015년부터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주거문제는 농업인의 집이나, 가건물, 임차 등의 임시방편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공공형 기숙사가 준공되면 근로자는 안정된 주거공간과 단체생활을 통한 빠른 현지적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받게 되고 고용농가는 지속가능한 농촌 인력을 확보할 수 있어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다.

○ 한편, 경남도의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요는 2022년도 1,140명에서 **2024년은 4,200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 또한, 경남도는 거창군에 이어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등 외국인계절근로자를 위한 기숙사가 필요한 시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공공형 기숙사를 단계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지역 여건에 따라 폐학교, 숙박

시설 등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발굴·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경상남도 농정국장은 “최근 농촌의 주거여건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따라가지 못해 외국인근로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이 문제가 되고 있었다”라며, “농촌지역 근로환경 및 주거여건 등을 개선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농업 생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3. 경북도,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Web+App)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포트’ 서비스 오픈

-경상북도(2023. 11. 20.)-

-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 정식 서비스 오픈(https://gb.go.kr/metaport)
- 웹3.0 기술 응용, 웹과 앱 서비스 동시에 제공해 접근성 향상
- 메타포트에서 제공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외부기관과 공유 시 메타버스 세상 무한 확장
- 대구경북신공항, 쇼핑몰, 경북도청, 컨퍼런스홀 등 가상공간에서 체험 가능

○ 경북도는 11월 20일 **「경북 메타버스 대표 플랫폼」(이하 ‘메타포트’)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 **메타포트**는 경상북도가 2022~2024년까지 **총사업비 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메인 공간**으로 구성하여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경북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이다.

○ **메타포트**는 이용자들이 가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체험을 통해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메타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기업이 가진 신기술을 선보여 **경북이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개발하게 되었다.

○ **메타포트**는 **전국 최초** 확장형 하이브리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3.0 기술**을 응용하고, **웹(Web)과 앱(App)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며 Open-API를 이용하여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하여 만든 플랫폼이다.

○ 메타포트가 제공한 Open-API를 통해 로그인, 아바타 등 **연동이 가능**해져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학교 등이 보유한 메타버스 콘텐츠를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처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지 않고, **웹 페이지**(https://gb.go.kr/metaport)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 **메타포트 앱(App)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 **메타포트에 접속**하면 우선 메인 화면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서 **나만의 아바타**를 만나게 된다. **마이크, 메시지 입력창** 등이 있어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며, **미니맵**을 이용하면 메타포트 내 각 공간을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공항 로봇**을 만나면 **카트레이싱 게임**도 즐길 수 있다.

○ **쇼핑몰**에서는 롯데면세점 등 5개 **면세점**과 **지역 고향장터 사이소**가 있어 **면세품 쇼핑**과 **다양한 지역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경북도청**에서는 도정과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로비에서 전자책(E-Book), **영상갤러리와 사진갤러리**를 통해 볼 수 있다.

○ **확장현실(XR)체험존**으로 이동하면 체험존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 방문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전시실에서는 **멋쟁이 캐릭터**와 함께 **신라시대 와당**을 활용한 **퍼즐게임**을 즐길 수 있다.

○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지사실**로 이동하면 도지사와 함께 사진 촬영이 가능하며, **경북을 상징하는 낱말퀴즈 게임**도 즐길 수 있다.

컨벤션홀에서는 다양한 경북의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다.

○ **▲컨퍼런스홀**은 대규모 인원 수용이 가능한 공간으로 지역 기업들이 세미나와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전시홀**에서는 각 기업의 특색 있는 **홍보관 개설**이 가능하며, **영상회의 사무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지역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한다.

○ 한편, **3단계**로 개발되는 **메타포트**는 **지난해** 메타버스 공간에 통합신공항을 메인 플랫폼으로 하여 쇼핑몰(면세점)을 구성하고 아바타, 채팅·회원가입, 사이트 연동을 위한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기능 개발 등 **플랫폼 기반을 조성**했다.

○ **올해**는 **플랫폼 확장**을 위해 **경북도청, 컨벤션홀, 지역특산물 마켓 사이소** 등 공간디자인을 설계했으며, 모바일 단말기 지원을 위한 **앱 기능** 등을 개발했다.

○ **내년**에는 **관광, 교육** 서비스 기능 구축 등 **이용자 접근성 향상**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콘텐츠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 **가상투어 기능**을 통해 **관광지를 안내**하고, **학교·교육용 강의실 연계 기능**을 구현하여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경상북도지사는 **“메타포트**는 **국내 최초** 확장형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웹과 앱 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개방성과 무한한 확장성**을 고려해 개발한 **플랫폼**으로, 이용자들의 **메타버스 접근성 향상이 기대**된다”라며,

○ **“메타버스 수도 경북**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4.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7명 임기제로 채용…장애인 전형 최초 실시

-경기도(2023. 11. 17.)-

- ‘장애인 일자리 운영요원’ 등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7개 직위
- 기존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 실시해 임기제 추가 채용

○ 경기도가 전문성을 갖춘 장애인 7명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

○ 경기도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전문·특수분야 전문가 채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제14회 경기도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장애인 구분 모집)’를 16일 경기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 **이번 채용**은 기존 공채의 장애인 구분모집과 별도로 **장애인 전형을 만들어 임기제를 채용**하는 것이다. 필수과목(국어·영어·한국사)과 선택과목 등 필기시험만으로는 강점을 드러내기 어려운 전문·특수분야의 장애인 인재를 발굴하고, 공직문호를 확대하려는 시도로 경기도에서는 처음 시행된다.

○ 채용분야 및 직급은 ▲장애인일자리 운영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계약업무 지원요원(일반임기제 행정7급) ▲노동상담 및 권익구제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언론홍보콘텐츠 기획·제작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국선대리인 지원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전문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온누리관 시설관리 요원(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등 7개 직위다.

○ 채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경기도 인사과 인재채용팀(031-8008-4063, 406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기도 인사과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임용 후에도 불편함 없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과 업무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직위를 발굴했으니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공직에서부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5. 서울시교육청, 학교급식로봇 공개의 날 운영

-서울특별시교육청(2023. 11. 22.)-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숭곡중학교(성북구 종암로)에서 운영중인 급식로봇*을 2023. 11. 22.(수) 공개**한다.

＊급식로봇 4대: 볶음 2대, 국탕 1대, 튀김 1대

- 서울시교육청의 급식로봇도입은 **급식대량조리 시 발생하는 조리흄과 높은 노동강도로부터 조리종사원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 방안의 일부이다.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23년 급식로봇 도입을 위하여 컨소시엄*을 구성,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 대규모 로봇 융합모델 시범사업 공모·선정 된 바 있다.

＊컨소시엄: 서울시교육청,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로보틱스

- 이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쳐 **2023년 2학기부터 로봇이 만든 학교급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2023.11.22.(수) 로봇 급식 공개 행사에는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한국로보틱스 대표 등 약 40명의 인사들이 학교를 방문하여 함께 한다.

○ 급식 공개의 날에는 로봇 조리 전 과정 공개와 함께, 학교급식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스템 설계, 표준 레시피 개발, 위생 및 안전장치, 급식조리원 적응을 위한 로봇운영 교육 등 운영 전 과정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 또한, 급식로봇 도입으로 **급식조리원의 폐 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질환 문제 개선** 등 서울시교육청의 학교급식실 환경개선 노력에 대한 중간 성과도 공개한다.

○ 10월 초 학교 급식실 종사자 대상으로 실시한 **급식로봇 운영 만족도 조사** 시, **근무 여건개선 도움(83%), 기존 대비 25~50% 업무 경감(86%),** 사업 지속 확대 필요(85%), 튀김 로봇 업무 경감에 탁월하다는 응답을 하였다.

○ 서울시교육감은 급식로봇 도입과 더불어 “조리종사원 업무경감을 위하여 배치기준 하향과 식판 렌탈 등 조리종사원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을 확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Ⅷ. 국회예산정책처 예산 분석 사례

Ⅷ 국회예산정책처 결산 분석 사례

1.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의 ISP를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2024년 예산 분석/2023. 10.)-

가. 현 황

○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은 **선제적인 쌀 수급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쌀 수급 관련 통계 및 관측 정보의 수집·활용 등 쌀 생산 관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이 신규로 편성

[2024년도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정부양곡관리비	351,964	348,112	409,078	60,966	17.5
쌀 수급예측시스템 구축	-	-	1,000	1,000	순증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 개발비용 7억원과 HW·SW 구입비용 3억원 등 총 10억원을 반영함.

[쌀 수급 예측 시스템 예산안 세부내역]

○ 일반연구비(260-01목) : 700백만원
- 시스템 개발 1식×700백만원 = 700백만원

○ 자산취득비(430-01목) : 300백만원
- 장비(SW, HW) 구입 1식×300백만원

나. 분석의견

○ **ISP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수급예측 시스템이 편성되어 예산안의 산출근거의 구체화가 필요하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도 농림업관측 전담기관으로서 벼 작황을 관측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농업관측과 차별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위한 ISP[1]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023.6.21. 기타운영비(210-016목) 1억 3,000만원을 일반연구비(260-01목)로 전용하였고, 2023.8.17.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ISP 수립 계약(계약액 총 9,090만 9,000원)을 체결하였다.

[쌀 수급 예측 시스템 ISP 구축 예산 전용 내역]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아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023.6.21.)	정부양곡 관리비 (2131-366)	210-16	130	정부양곡 관리비 (2131-366)	260-01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2024~)을 위한 연구 용역 등 추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그런데 **ISP 수립 용역계약 기간이 2023.8.17.~12.31.**로, 예산안 제출일(2023.9.1.)기준 **ISP 수립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측시스템 구축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정보시스템구축은 원칙적으로 IS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 다만, ISP를 수립 중이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매우 높아 차년도에 구축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의 경우 ISP 수립 완료 이전에도 시스템 구축 추진이 가능**한데, 이 때에도 **ISP 기본 구성 내용을 포함한 중간산출물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 하지만 ISP 수립 용역이 시작(8.17.)한 이후 예산안 제출 시점(9.1.)까지 **15일 미만의 기간 동안 ISP 기본 구성 내용을 포함한 중간산출물**을 작성·완료하여 **기획재정부에 검토를 요청하기에는 기간상 내용이 충분히 검토되기 어려워** 보인다.
- 또한, 시스템 기능 측면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농림업관측업무 또는 국제곡물관측업무를 실시하기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정되어 있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7년부터 쌀을 관측대상에 추가하여 산지동향과 관측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 그런데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이 쌀 생산을 관측하고 수급을 예측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농업관측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며, 이는 ISP 수립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ISP 수립 전에 예산이 반영된 **쌀 수급 예측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편성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 한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관측 업무와 쌀 수급예측 시스템의 기능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1) 정보화전략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은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함

2.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보건복지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황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성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이며, 2024년도 예산안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35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2024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10,028	26,875	43,455	16,580	61.7
긴급돌봄 지원사업	-	-	3,500	3,500	100.0

○ 2024년 예산안에 **1명당 50만원 씩 총 10,000명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총 35억을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2024년 긴급돌봄지원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구 분	산 출 내 역
긴급돌봄 지원사업	◦ (산출) 10,000명×500천원×**70%(보조율)**=3,500백만원

□ 분석의견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편성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서비스 지원 시간 및 한도,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미비하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하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대상으로 월 25 ~ 60시간 범위 내에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2024년도 긴급돌봄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대상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19세 이상 성인
지원내용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 제공
서비스 시간	월 25~6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기간	한시성이 특징인 만큼 2주에서 1달내외 지원이 원칙으로 예외적으로 추가지원 가능(추가적 위기에 대비해 연간 한도 내 지원)
비용 부담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서비스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상에는 적정 자부담을 부과하도록 설계

자료: 보건복지부

- 동 사업의 경우, **2024년도 예산안을 통해 신규 편성**된 만큼 사업 대상 및 지원 시간, 비용부담, 서비스제공기관 등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먼저 ① **사업 대상은 10,000명으로 설정**하였는데 편성 근거는 유사 사업인 서울시 돌봄SOS사업 대상자를 전체인구수에 비례하여 산출한 17만명, 노인인구 중 돌봄이 필요하나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인구 9만명,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중 공공서비스 이용을 요청한 인원 9만명('20 ~ '22, 연평균)으로 추정하여 **총 35만명을 모수로 설정**하였다.
- 그리고 **사업 수행을 통해 실제 서비스 수요자 추계를 반영하고자, 시범적으로 1만명을 먼저 실시**한다는 계획이나, 사업의 대상으로 산출한 총 35만명에서 **최종적으로 1만명을 선정한 타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업 추계근거가 특정 지자체 사업으로 전국단위 사업의 산출 근거로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대상에 대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② **1인당 지원시간으로 설정한 25시간**은 1인당 지원내역(20천원X25시간 = 500천원)에서 평균 시간을 단순 산출한 것이다. 바우처 사업은 개인 상황에 따라 이용 형태가 다양한데, 보건복지부는 지원시간 및 한도 등에 대해서 추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바우처 사업의 경우 지원 시간에 따라 사업의 소요

예산이 달라지므로 지원 한도 범위를 설정하여, 필요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함에도 **지원 시간 및 한도 등에 대한 기준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은바, 사업 계획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다.

- 다음으로 ③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른 본인 부담 차등화 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며, **구체적 소득 구간 및 본인부담 비율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긴급성을 요하는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므로 대상자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적합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나, 보건복지부는 **④ 대상자 결정 평균 소요시간 및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세부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
-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결정 평균 소요시간은 서비스 신청부터 제공까지의 평균 소요시간이며 신청, 접수 절차 및 제공기관 연계 방식, 관련 전산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향후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은 공공 및 민간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는 계획만 하고 있고 세부 기준은 설정하지 않았으며, 지역별 배분에 대한 기준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서비스 제공기관 모집 시 지역별 배분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보건복지부는 동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기준들에 대해 추후 구체적으로 계획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미 사업의 예산안이 편성된 상태이므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
- 그러므로 보건복지부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 지원 시간 및 한도, 비용부담, 서비스 제공기관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3.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학생맞춤형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 교육위원회(2023년 예산안 분석/2023. 10.)-

□ 현 황

○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는 **교육기본통계 조사·분석, 국제교육지표사업참여, 학생맞춤지원 실태조사, N수생 사교육비 조사모델 개발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1,100만원이 감액된 5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4년도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예산안(B)	증감	
				B-A	(B-A)/A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	5,895	6,915	5,704	△1,211	△18.5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	1,000	930	△70	△7.0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는 **학생 지원 현황 실태 및 학생의 욕구 파악을 통해 취약·위기학생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에는 시범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2024년에는 본조사 실시를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분석의견

○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본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학생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 교육부는 2023년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시범조사를 2023.8 ~ 2024.2 동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부는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시범조사를 「통계법」제3조, 「통계법 시행령」제2조,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조에 근거하여 수행하고 있다.
-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학교 내에서 지원하는 학생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주체를 학교로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시범조사는 학교 내에서 수행되며 학생개인정보를 공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 특히, 교육부는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생 기본정보, 기초생활수급 정보, 학대피해 정보 등과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의 학생정보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므로, **학생개인정보에 대한 활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 따라서 학생맞춤지원실태조사 본조사를 수행하고 본조사를 통해 확보한 학생정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학생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Ⅸ 감사원 주요 감사 사례

1. 지방자치단체 침수예방시설 구축 추진실태

–감사원 감사보고서(2023. 10.)–

□ 감사배경 및 목적

○ 감사원은 지난해(2022년 12월) 실시한 ‘도심지 침수예방사업 추진실태’ 감사의 후속 감사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주요 침수예방사업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연간 감사 계획에 반영하여 감사

□ 감사중점 사항

○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예방사업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 감사실시 과정

○ 감사는 2023. 4. 17.부터 같은 해 5. 4.까지 14일간 감사 인원 10명을 투입하여 실지감사를 실시

□ 감사결과 처리

○ 감사결과 위법·부당사항 등과 관련하여 감사대상기관과 업무처리 경위·향후 처리대책 등에 대한 질문·답변 과정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였고, 이후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의 답변 과정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2023. 10. 19.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

□ 감사결과

○ 감사결과 총 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

(단위:건)

구분	합계	징계	주의	통보	통보(시정완료)
건수	3	1	1	1	·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부는 지자체 등에서 수자원·하천 관련 계획 수립 시 기본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홍수량 산정 등을 목적으로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금강·영산강·섬진강)'을 수행(2017년~2020년, 24억 원)

-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홍수량 채택빈도를 임의로 적용**함으로서 **홍수량 산정 오류가 발생**하였고, 하천 자료를 누락하는 등 **용역성과물이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채 2020년 4월 준공처리
- 그 결과 **전라남도에서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위 용역의 부실한 자료가 사용**됨으로써 **정비 우선순위가 잘못 작성**되는 등 이를 근거로 수립될 **수자원·하천 관련 계획이 부실화**될 우려

○ 이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요구

□ 조치할 사항

○ **부실하게 구축된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금강권, 섬진·영산강권, 제주)" 성과물을 재검토 후 수정·보완**하고, 보완한 보고서를 **다시 발간·배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통보)**

○ "전국 하천유역 홍수량 산정용역(금강권, 섬진·영산강권, 제주)" 감독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한 B를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며**(징계)**

○ 앞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용역 성과물을 준공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 용역 준공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국 ㉯과 F(현 영산강환경유역청 ㉯국)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주의)**